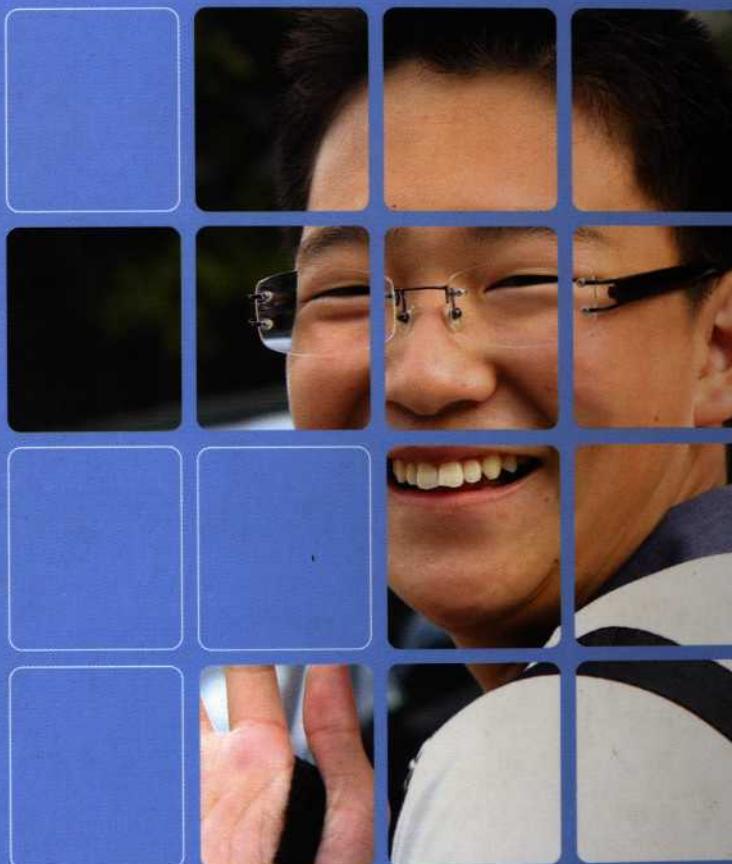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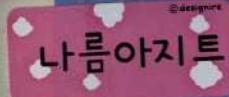


<http://chamkb.eduhope.net>



2008 경북학생인권 백서



2008  
경북학생인권 백서

학생, 교사 연대로 인권존중 학교 만들기



# **2008 경북학생인권 백서**

**- 학생, 교사 연대로 인권존중 학교 만들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령

### 한국교직원노동조합 2008

- 다음은 교직원 종종동의 등록번호와 이름입니다.

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교원단체와 연대한다.

### 부록 2008 경북학생인권백서

## 차 례

### 참교육실천 강령

우리는 교육민주화 운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육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참교육실천 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1.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 확보와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생활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인권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1. 우리는 교육과정을 창조적으로 운영한다.
1. 우리는 서로 돋고 협동하는 학습의 원리를 구현한다.
1. 우리는 학생자치를 존중하고 돋는다.
1. 우리는 동료 교사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다.
1. 우리는 학부모 ·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1. 우리는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한다.

제 목	쪽
발간사	5
<b>I. 경북 학생인권 현황</b>	
1. 2008 경상북도 중 · 고등학교 학생인권 보고서	8
2. 경북지역 학생인권 설문조사 보고서	51
<b>II. 2008 학생인권 포럼</b>	
1. 경북학생인권 현황과 과제	135
2.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에 나서자	163
가.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	172
나. 일본 가와사키시 조례	179
<b>III. 자료: 학생인권 관련 법률 및 권고</b>	
1. 학생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권고	202
2.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224
3.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237
4. 법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내용	243
5.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 법률	252
6. 권영길의원 발의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	260
<b>IV. 부록</b>	
1. 청소년헌장	268
2. 유엔 어린이 · 청소년 권리 협약	270
3. 세계 인권 선언	276
4. 국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282
5. 국내 인권 관련 단체	314

## 학생인권을 넘어

모든 사회적 약자의 연대로 나아가자

박태규(전교조경북지부장)

2006년 경북학생인권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한 후 2년여 만에 다시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그 사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인권이 법률로 보호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7년간의 장애인 인권을 위한 투쟁이 미흡하나마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아직도 학교 앞에 선도부가 등굣길을 가로막고 있고 잡다한 학칙들이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 교사나 동료 학생들에 의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앞에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되기 일쑤이다.

이번 학생인권백서를 준비하면서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여러 차례 토론회와 협의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학생인권이 특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약자의 인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인권이나 여성인권,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인권, 성소수자의 인권, 빈민의 인권, 학생인권 등 이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자들의 인권은 당연한 듯 무시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다수결로 등치시키며 소수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맹목적 집단주의를 교육하고 있다.

“학교를 다닐 때 노동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배운 적이 없다.” “학생 시절에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 는 말이 토론회에서 나왔을 때 그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또한 “입시경쟁교육 속에서 교사가 경쟁을 감시하고 격화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한 학생인권은 지켜질 수 없다.” 는 한 교사의 호소는 가슴 아픈 이 땅의 교육현실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피해자일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학생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빈번히 유린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느끼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교육주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 이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먼저 학생을 입시의 노예로 만드는 경쟁적 입시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에 나서자.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사랑과 이해로 관계를 만들어나가려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자세는 물론 중요하고 바람직한 관계형성의 기본이다. 그러나 협력과 공존이 아니라 경쟁과 배제가 지배하는 입시제도 속에서는 그 노력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어렵다. 성적에 의한 차별과 무시, 체벌이 학생인권유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 개인의 품성을 문제 삼는 것은 몸속의 암 덩어리를 그대로 두고 겉으로 고름이 흘러 나오는 종기만 주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입시문제를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뒤로 미룬다면 전교조는 교원평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다음으로는 학생운동, 학부모운동, 교사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여성운동, 성소수자운동 등 모든 세력이 흐트러진 연대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 학생인권 보장은 학생의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미친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연대해야 가능하다. 주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연대의 중요성 또한 재론의 여지없이 명확하다. 연대는 더 큰 조직이 더 작은 조직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더 힘이 센 조직이 아직 조직력이 미약한 조직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수평적 관계야말로 연대의 핵심이다. 더 이상 교사가 앞장서고 교사의 지도를 받는 학생운동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와 여타의 운동세력과 수평적인 연대를 이루어낼 때 학생인권운동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백서의 발간이 그러한 운동에 하나의 작은 밀거름이 되기를, 너나할 것 없이 서로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하고 굳건한 연대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 I. 경북 학생인권 현황

# 2008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보고서

- 포항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학생자치규정을 중심으로 -

경북 학생인권 보고서

경북지부 학칙분석팀

## 차례

### I. 들어가며

- 필요성
- 배경
- 대상과 방법

### II. 학생 생활 규정

- 학생생활규정의 목적
- 용의·복장 규정
- 징계 규정
- 체벌 규정
- 통신 규정

### III. 학생자치활동 규정

- 학생회 활동
- 회장단 입후보자 자격
- 학생회의 역할

### IV. 외국의 학교 규정

### V. 마무리

## I. 들어가며

### 1.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가정, 사회에서 '청소년은 미성숙자이기 때문에 어른의 지도가 없으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통제 위주의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세기에 들어 과학과 발달심리학의 발달로 아동과 청소년 일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루소와 듀이의 자연주의적 아동관이 설득력을 얻게 됨에 따라 청소년은 성인을 표준으로 한 미성숙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갖는 온전한 인격체로 규정하였다.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받아 본 경험이 없으면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형성되기 어렵고, 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특히 고등학생은 7~8시에 등교하여 아침 보충수업, 정규수업, 오후 보충수업, 자율을 가장한 타율학습을 마치고 밤10시가 넘어야 하교를 한다. 초·중학생도 다가올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성적향상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친다. 도·농간 차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이다.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현재의 삶은 철저하게 무시된다.

청소년들의 미래가 중요하다면 현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현재의 삶을 바탕으로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에 교과 내용의 학습과 더불어 문화적 감수성,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의식,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형성되어야 미래에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문화적 감수성, 사회적 의식, 주체적인 삶의 태도 형성은 청소년 시기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누리며,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경험해봄으로서 가능하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서 청소년의 인권은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학교의 인권 실태는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인권존중의 수준이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의 수준이라 할 정도이다. 때문에 학생인권존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북 포항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북 포항지역의 학생인권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규정들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배경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인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두발 자유화 조치에서부터이다. 두발 자유화 조치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가 두발의 길이와 스타일을 규제하자 학생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나섰다. 1983년 두발 자유화 이후 두발에 대한 규제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다수의 학교가 두발 길이와 스타일에 대한 제한을 학칙으로 규정한다. 그러자 학생들은 이 규정에 반발하여 2000년 8월초 거리에서 두발 자유화를 외쳤고, 인터넷을 통해 서명운동에 나섰다. 나아가 청와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9월 학교생활규정 예시 안을 공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두발에 대한 규제권이 이미 학교장으로 넘어간 상태였으므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기는 어려웠다. 2005년 5월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중학교의 92.6%, 고등학교의 91.1%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 27일 학생 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다.

학생인권 침해는 두발, 복장 등 용의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강제 보충수업, 소지품 검사,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체벌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1998년 1월 교육개혁위원회는 학생체벌 금지를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장기적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1998년 3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체벌 금지 원칙을 마련하였다. 2000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교사의 체벌 재량권 인정 결정이 내려졌고, 2003년 2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아동 체벌을 전면 금지도록 권고하였다. 2005년 9월, 교육부는 상습 폭력 교사 퇴출 등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했으며, 2006년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학생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O고에서 지각한 학생에게 무려 200대를 때린 과도한 체벌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2006년 8월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벌을 간접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에 명시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안 없는 체벌금지가 자칫 교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초·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적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학생 징계 규정에 ‘출석중지’<sup>1)</sup> 조항을 추가하였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4년 10월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마산, 창원지역 고등학교 학생인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산 창원지역 34개 고등학교의 학생선도규정, 학생체벌규정, 학생자치활동규정, 학생 활수칙,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분석하였다. 2006년 전교조 전체의 2대 과제 중 하나인 아이들 살리기 운동의 흐름으로 학생인권 법안과 자치법안 제정을 위한 사업은 전국적 차원으로 학생인권 의제가 되었다. 이에 경북 지부는 학교 내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존중을 결의하는 장을 만들고 학생인권존중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북학생인권백서를 발간하였다. 2008년 광주를 중심으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법 제정 움직임이 재개 되었고, 10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학생인권법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경북 포항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 규정들을 검토하면서 학생인권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지역별로 진행 중인 학생인권 조례 제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의미를 가진다.

## 3. 대상과 방법

### 가. 대상

분석 대상은 경상북도 포항교육청 산하 중학교 17개교와 고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경북 포항에 있는 36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규정과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수집하였다.

[표1] 자료수집 현황

순번	구분1	구분3	학교명	학 生 생활 규정	학 生 자 치 활동 규정	구분1	구분2	구분3	학교명	학 生 생활 규정	학 生 자 치 활동 규정
1	중학교	남	M1	○	○	고교	실업계	남	H1	○	○
2	중학교	남	M2	○	○	고교	인문계	남	H2	○	○
3	중학교	남	M3	○	○	고교	인문계	남	H3	○	○
4	중학교	남	M4	○	○	고교	인문계	남	H4	○	○
5	중학교	공학	M5	○	○	고교	인문계	남	H5	누락	○
6	중학교	공학	M6	○	○	고교	인문계	남	H6	○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7	중학교	공학	M7	○	○	고교	실업계	남	H7	○	○
8	중학교	공학	M8	○	○	고교	인문계	공학	H8	○	○
9	중학교	공학	M9	○	○	고교	인문계	공학	H9	누락	○
10	중학교	공학	M10	○	○	고교	자사고	공학	H10	○	○
11	중학교	공학	M11	○	○	고교	인문계	공학	H11	○	○
12	중학교	공학	M12	○	○	고교	인문계	공학	H12	○	○
13	중학교	공학	M13	○	○	고교	인문계	공학	H13	○	○
14	중학교	공학	M14	○	○	고교	인문계	공학	H14	○	○
15	중학교	여	M15	○	○	고교	실업계	여	H15	○	○
16	중학교	여	M16	○	○	고교	인문계	여	H16	○	○
17	중학교	여	M17	○	○	고교	인문계	여	H17	○	○
18						고교	인문계	여	H18	○	○
19						고교	실업계	여	H19	○	○

\* 학교명은 약어로 표기한다.

자료 수집 현황은 위의 표와 같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생활규정 속에 학생회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생활 규정과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따로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자치활동 규정이 학생생활규정 속에 포함되어 하나의 장으로 있더라도 규정한 내용을 정리하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학생자치활동규정을 별도로 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19개 학교 중 2개 학교는 온전한 모습의 학생생활규정을 수집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에는 학생선도규정이나 별첨규정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 나. 방법

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중학교 17개교와 고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학생 인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학생생활 규정과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장은 학생생활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생활규정의 목적, 교육주체들의 의무 규정, 용의 복장 규정, 징계 규정, 체벌 규정, 통신 규정을 분석하여 각 규정들이 학생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학생생활 규정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본다. Ⅲ장은 학생자치활동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회의 성격과 위상, 회장단 선출 규정, 학생회의 기능 규정 등을 분석하여 학생인권 존중을 위해서 포함해야 할 학생자치활동 규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외국의 학생생활규정들을 살펴보자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학생 생활 규정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도 등)에 의거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올바르게 학생을 선도하려는 목적으로 학생생활(선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에 포함된 내용은 주로 학생학부모, 교사가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다.

### 1. 학생생활규정의 목적<sup>2)</sup>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학생생활규정의 목적에 대하여 유엔아동 권리협약과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의 이념과 맞지 않으므로 개정을 권고하였다. 유엔아동 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이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하게 하는데 두고 있다. 교육기본법(제2조)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 하게 함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생활 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익과 생존·발달을 보장하기 보다 사회질서유지에 목적이 있는 듯하다. 학생생활 규정의 목적은 위의 법이념에 맞고 오늘의 학생인권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표2] 학생생활에 대한 학부모 의무

학교명	학부모의 책임		개정일		학교명	학부모의 책임		개정일	
	교외	교내	선도규정	생활규정		교외	교내	선도규정	생활규정
M1	협조 및 서약		2008 0423	H1	무한책임		2008 0301	2008 0915	
M2			2007 1114	H2	무한책임		생활규정에 포함		2007 0402
M3	무한책임		2008 0302	H3			2007 0901	2007 0901	
M4			2007 0306	H4	무한책임		생활규정에 포함		2008 0401
M5	무한책임			H5			2008 0303	규정 누락	
M6			2005 0901	H6	생활규정에 포함				2005 0912

2)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M7	협조 및 서약		2005 0301	H7	통보협의		2008 0301
M8	협조 및 서약		2008 0327	H8		생활규정에포함	2008 0710
M9	협조 및 서약		2008 0302	H9		2006	규정 누락
M10			2008 0302	H10	통보협의		2007 0301
M11			2008 0320	H11		2008 0301	
M12				H12	무한책임	생활규정에포함	2007 0901
M13	무한책임		2007 0501	H13			2006 1113
M14	협조 및 서약	2006 0901	2006 0901	H14		2006 1113	2008 1025
M15		2008 0314	2008 0314	H15	통보협의	생활규정에포함	2008 0301
M16			2008 0428	H16	무한책임	2007 1210	2007 1210
M17	무한책임	2008 0303		H17	무한책임	생활규정에포함	2007 0901
				H18		생활규정에포함	2007 0302
				H19		생활규정에포함	2007 0319

분석한 34학교의 규정 중에서 개정일은 2005년이 3개교, 2006년이 2개교, 2007년이 11개교, 2008년이 15개교이다. 나머지 3개교는 개정일이 없었다. 개정일을 알 수 없는 3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일은 2005년 이후이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학생생활 규정에 대한 교육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에 개정된 것이다.

학생생활 규정의 목적과 달리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의무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대해 2002년 9월 국가인권위에서 교육부로 “학교생활규정을 학생들의 권리 중심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sup>3)</sup>. 그러나 이것을 수용하여 개정한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2.09.09)

7. 학교생활규정을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 받는다’는 등의 권리 중심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아직도 학교생활규정에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만 잔뜩 모여 있다.

보호자의 의무는 교외생활에서 학생에 대한 관심을 선언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학생의 교내·외 생활에서 ‘보호자의 의무는 규정이 없는 중학교가 8개교, 고등학교는 9개교이다. 규정이 있더라도, 학생의 생활 중 심각한 이상 발생시 학교에 알리거나,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과 도의적 책임을 지는 정도이다. 이것은 학생을 잠재적 문제아 또는 비행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비행을 방지토록 선도” 하는 규정보다는 “건강한 교외생활을 하도록 유도”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호자의 의무 예시

##### H10 – 교외 : 통보협의

제25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H17 – 교외, 교내 : 무한책임

제4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더구나 학생의 교내·외 생활로 인한 타인이나 학교에 손해 발생시 보호자가 져야 할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 및 도의적 사죄는 민법 제755조에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 법과 각종 규정은 윤리·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최소한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기보다는 학생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의 임무는 원칙에 언급된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며 선도 위주의 처리와 생활선도협의회 구성, 징계시 지도 등이 나타나 있다. 학생생활규정에는 생활선도협회란 기구를 두어 학

-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식 학습 분위기, 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한 의사 결정의 자율성 부재 등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해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안처럼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로,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권리의 주체로 대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도록 하여야 함.

생생활지도(선도)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이 징계가 대부분이다.<sup>4)</sup>

## 2. 용의·복장 규정

학생생활 규정 중 용의·복장 규정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매일 교사들과 부딪혀야 하는 분야이다. 그만큼 학생들이 규정에 자기 의사를 개진하려는 욕구가 많고 다양한 시도(교사의 입장에서는 규정위반)들을 하는 부분이다.

용의 규정은 4단계 평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sup>5)</sup> 편의상 전면허용을 1, 부분규제를 2, 많이 규제를 3, 전면규제를 4로 평정하였다.

### 가. 두발

학생생활규정중 용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활발하게 되는 것이 두발과 관련된 것이다. 두발규제는 교내생활지도에서 교사와 학생이 가장 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2005년 강제 이발 실시를 비롯해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두발에 대한 제한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생 두발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다. 이에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하였다.<sup>6)</sup> 그 영향으로 두발에 대한 자유는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선

4) 제4조 <생활선도협의회>

①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시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 학생부장,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학년부장(해당학년), 학생부교사(생활지도 담당교사)로 하고, 학생부장을 간사로 하여 교감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③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퇴학처분에 해당되는 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 의결하여 처리한다. 단 담임교사 및 관련 교사는 필요시 의견진술, 참고인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5) 각 사항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학생의 자율에 맡긴 경우를 1(전면허용), 학생의 자율에 맡기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규제하는 경우를 2(부분규제), 학교에서 일전한 기준을 정해두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3(많이 규제), 학교에서 단일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를 4(전면규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6)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2.09.09)

1.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에 대한 침해이다.

2. 학생의 두발에 대한 제한은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한정적인 경

증·고등학교에서 기존의 관행에 따라 규제가 심한 학교도 많다.

[표3] 두발 규정

학교명	두발 규정				학교명	두발 규정			
	두발	가발	염색	파마		두발	가발	염색	파마
남	여				남	여			
M1	3		4	4	H1	2		4	
M2	3		4	4	H2	2		4	
M3					H3	3		3	4
M4	4		4		H4	4		4	4
M5	3	2	4	4	H5	규정 없음			
M6	4	3	4	4	H6	규정은 있으나 허용범위 내용 없음			
M7	3	4	4		H7	3			
M8	2	2	4	4	H8	4	3		4
M9	2	2	4	4	H9				
M10	3	2	4		H10	4	4		4
M11	3	2		4	H11				
M12	3	4	4	4	H12	3	2		4
M13	3	3	4	4	H13	3	3		4
M14	4	3	4	4	H14	4	3		4
M15		2	4	4	H15		3		4
M16		2	4	4	H16		2		4
M17					H17		2		4
					H18		2		4
					H19				

두발 길이에 대한 규정은 조금 완화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남학생은 스포츠형 머리만 허용하고 여학생 커트머리도 단발형 커트만 허용하고 쇼트 커트는 금지하는 등 규제가 심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남학생에게는 두 귀가 모두 드러나도록 머리형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머리가 어깨선을 넘지 말아야 하며, 어깨에 닿거나 넘을 경우 반드시 묶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머리형을 자율로 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머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에 한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과 절차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합리적 과정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행의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나 각 시·도 교육청의 지도·감독 또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사와 학교 당국의 기준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한 권고안<sup>7)</sup>에서 기준의 모호성과 자신의 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언급하면서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발, 염색, 파마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 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두발 규정의 예〉

H10 – 남학생 4(전면규제), 여학생 4(전면규제).

⑥ 남학생 두발은 조발기를 이용해 옆머리와 뒷머리를 짧게 깎은 스포츠형의 머리나 장교 머리로 한다. 장교머리 시에는 옆머리와 뒷머리는 조발기로 아주 짧게 깎아야 하며, 윗 머리는 기르되, 앞머리가 길어도 눈썹에 닫지 않도록 하고 가르마는 탈 수 없다. 구레나룻은 허용하지 않는다.

⑦ 여학생의 머리는 커트머리, 단발형 머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발형 머리로 할 경우에는 앞이나 뒤가 일자형이 되게 한다. 이때 앞으로 훌러내리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한 머리띠를 허용한다. 머리카락의 길이는 최대 귀밑 10센티미터로 하되, 학교 내에서는 반드시 귀밑으로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색조화장은 일절 금한다.

⑨ 무스, 스프레이, 젤, 왁스 등의 사용, 파마 등의 두발 장식을 위한 행위, 학생답지 않은 악세서리 등은 일절 금한다.

M13 – 남학생 3(많이 규제), 여학생 3(많이 규제)

#### 제16조<용의사항>

남학생의 두발은 스포츠형, 상고머리로 하되 앞머리는 5~7cm으로 단정하게 자른다.

여학생의 두발은 단발형, 묶음형, 커트형으로 하되 뒷머리가 어깨에 닿지 않도록 한다.

H17 – 여학생 2(부분규제).

#### 제22조<두발>

① 두발의 길이와 묶는 것은 자율로 한다. 단 학생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지나친 두발의 길이와 묶는 것은 금지한다.

7) –‘학생신분에 맞는’이라는 규정은 표현이 모호하고 그 판단을 학교당국이 독점하게 되는 것임. 또한, 두발상태 불량으로 적시한 무스·젤 등을 사용하여 ‘두발형태의 변형을 가하지 않은 범위 내’라는 규정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자의적 별점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 학교 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용의사항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예시하여야 할 것임.

두발제한 규정은 기존의 규정에서 몇 cm 길이를 더 허용하는 선에서 개정되었다. 남학생은 스포츠형 머리에서 두 귀가 드러나는 머리형으로, 여학생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넘을 수 없다’에서 어깨를 넘을 경우 묶을 수 있다는 선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볼 있다. 이렇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구성된 학생 두발 규정은 창의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의 방향과는 맞지 않다. 창의성이나 개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실천해 봄으로써 기를 수 있고 체화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두발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의 침해하는 것이다. 두발 규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신경전을 확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학생의 두발 규정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학생이 누려야 할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가야 한다.

#### 나. 복장과 장식

용의 규정 중에서 복장과 장식은 가장 규제가 심하다. 복장은 교복만을 허용하고 학교장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장식은 모든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다.

[표4] 복장과 장식

학교명	복장			장식		학교명	복장			장식	
	남	여	예외조항	남	여		남	여	예외조항	남	여
M1	4					H1	4			학교장	4
M2	4		학교장			H2	4			학교장	4
M3	4		학교장	4		H3	4				4
M4	4				4	H4	4				4
M5	4	4	학교			H5	별도규정 누락				
M6	4	4				H6	4				4
M7	4	4		4	4	H7	4				
M8	4	4		4	4	H8	4	4	학교장		
M9	4	4				H9					
M10	4	4		3	3	H10	4	4	학교장	3	
M11	4	4		4	4	H11					
M12	4	4				H12	4	4	학교장	4	
M13	4	4		4	4	H13	4	4			3
M14	4	4		4	4	H14	4				
M15		4			4	H15	4		학교장		
M16		4			4	H16	4				4
M17		4			3	H17	4		학교장		4

				H18	4			4
				H19	별도규정 누락			

복장의 경우 모든 학교가 교복을 정해서 입는다. 그런데 복장 규정에 겨울철에 입는 덧옷이나 방한용 의류까지 상세하게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덧옷 착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학교 내에서는 규제를 하고, 등하교시에 한해서 허용을 한다.

#### 〈복장 규정의 예〉

H4- 4(전면규제).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 규정 – 복장은 규정된 교복으로 한다.

1. 동복 : 진한회색바지, 체크무늬정장, 자주색넥타이, 분홍색 와이셔츠, 회색조끼, 혼대를 착용한다. 춘추복 복장은 동복 바지, 와이셔츠, 넥타이 혼대를 착용한다.
2. 하복 : 체크무늬 바지, 아이보리색 반팔 남방, 혼대를 착용한다. 하복 착용 시 속옷(런닝·셔츠)을 반드시 갖추어 입는다.
3. 동절기에 교외에서는 목도리 착용이 가능하다. (검정, 회색)
4. 덧옷 착용의 허용 범위

가. 춘추복 착용 시 잠바, 외투는 착용을 금한다.

나. 동복 착용 시 교복 안에 조끼를 착용한다.

다. 동복 착용 시에 외투, 점퍼, 목 티 착용을 허용한다. (단 12월, 1월, 2월)

– 점퍼, 외투는 검정, 청색, 밤색 계통만 허용한다. (등·하교 시만 허용, 교내착용 금지)

– 목 티는 검은색 계통만 와이셔츠 안에 착용 가능하다.

5. 체육복 착용 규제

– 체육복은 체육시간 이외 어느 경우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H16 – 4 (전면규제)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 규정 – 복장은 규정된 교복으로 한다.

1. 치마길이는 무릎 선(오금선)까지로 한다.
2. 치마 주름은 총 길이의 1/3선으로 한다.
3. 치마 옆단, 밑단, 상의 옆단 가르기 식의 교복에 대한 어떠한 변형도 허용하지 않는다. (변형 시 훈계 및 교내봉사 3일, 2차 적발 시 압수)
4. 동복, 춘추복의 경우 남방과 넥타이를 반드시 착용한다.
5. 하복 착용 시 속옷(런닝·셔츠)을 반드시 갖추어 입는다. 동절기 교외에서는 목도리 착용이 가능하다.(검정, 회색)
6. 덧옷 착용의 허용 범위

가. 춘추복 착용 시 잠바, 외투는 착용을 금한다.

나. 동복 착용 시 교복 안에 가디건 착용을 허용한다. (가디건을 학교에서 지정한 형식)

다. 동복 착용 시에 외투, 점퍼, 목 티 착용을 허용한다. (단 12월, 1월, 2월)

– 점퍼, 외투는 검정, 청색, 밤색 계통만 허용한다. (등·하교 시만 허용)

– 목 티는 흰색, 검은색만 가능하다.

#### 7. 체육복 착용 규제

#### 〈장식 규정의 예〉

H6 – 4(전면규제)

제8조(기타 휴대품) 학생은 목걸이, 반지, 선글라스 등 장신구를 착용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타인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흉기 등을 소지할 수 없다.

1. (처벌규정) 목걸이, 반지, 선글라스, 휴대폰, 흉기 등을 소지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M15 – 4(전면규제)

제7조(용의 복장)

5. 장신구(반지, 팔찌, 발찌, 목걸이, 귀고리, 눈물렌즈, 칼라렌즈 등의 악세 사리) 및 화장 품(로션은 제외)의 휴대는 금한다.

날씨가 추워도 교내에서는 덧옷 착용이 금지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덧옷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허용하는 경우에도 종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검정색이나 짙은 밤색 계통만 허용한다. 덧옷에 대한 규제를 보면 엄격한 기숙학교의 규정을 떠올리게 한다. 옷을 사기위해 의류 매장에 가 보면 너무나 다양한 색깔과 디자인의 옷들이 진열되어 있다. 학생용 옷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위의 규정에 맞는 옷을 구하기가 훨씬 어렵다. 복장 규정은 새롭고 개성 있는 것을 선호하는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어렵고 단순하며 유행에 뒤떨어진 것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외투의 경우 추위와 상관없이 교실과 교무실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에너지 절약 교육을 이유로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우리 헌법에서 행복 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포함하고 있다. 학교생활규정이 헌법에서 개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물론 학교는 학교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한 복장과 몸가짐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요구해야 한다. 학생이 교외에서 착용하는 복장까지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복장 규정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 다. 신발과 가방

신발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물건이다. 우리는 때와 장소에 따라 그 상황에 적절한 신발을 신는다. 운동화나 캐주얼 구두를 신는 것은 일반화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에서는 운동화를 주로 권장한다. 색상도 검정색이나 흰색 계통만 허용하며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다. 허용하는 경우는 캐주얼화 정도이다.

실내화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슬리퍼 형태의 실내화를 금지하고 끈이 없는 흰색 운동화를 신도록 권장하는 학교도 있다. 여름철에 끈이 없는 실내화를 하루 종일 신을 경우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다. 발 냄새는 물론이고 무좀에 걸려 고생하는 학생도 많다.

[표5] 신발과 가방

학교명	신발		가방		학교명	신발		가방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M1	2		2		H1	3		3	
M2	2		2		H2	3		3	
M3	2		2		H3	2		2	
M4			4		H4	3		3	
M5	2	2			H5				
M6	2	2			H6	3		3	
M7	2	2	3	3	H7				
M8	2	2	2	2	H8	4		2	
M9	2	2			H9				
M10	2	2			H10	2			
M11	2	2	2	2	H11				
M12	3	3			H12	3		3	
M13	2	2	2	2	H13	3		3	
M14	3	3			H14	3	3	4	4
M15	2				H15		3		3
M16	2		2		H16		3		X
M17					H17		3		2
				4	H18		3		3
					H19				

학생들이 학교에 가려면 책과 기타 학습준비물이 필요하다. 가방은 그러한 학습에 필요한 것을 넣어 다니는 용도로 사용되며 학생의 가방사용 용도는 일정하게 이미 한계가 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해도 일정한 필요를 충족시

켜야 하므로 무분별하게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들은 오히려 아이들의 미적 감각이나 창의성을 감퇴시킬 수도 있다. 위의 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학생다운 것'의 기준도 어른과 아이들의 생각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다. 아이들은 당연히 학생다운 것으로 '밝고 화려하며 디자인도 다양한 것'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 〈신발과 가방 규정의 예〉

H12 – 신발 3(많이 규제), 가방 3(많이 규제)

- ① 가방은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하고 3원색(빨강, 노랑, 파랑)인 가방이나 지나 치게 화려한 가방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운동화(흰색이나 흰색, 검은색 혼용)로 3원색인 운동화나 구두는 착용할 수 없다.

H14 – 신발 3(많이 규제), 가방 4(전면규제)

#### 1) 남학생 규정

신발 : 실외화는 운동화 또는 검정색, 흰색계통 학생화(굽은 4센티미터 미만), 실내화는 끈이 없는 흰색 운동화 또는 슬리퍼(고급품, 화려한 것은 제외)

가방 : 학생용 가방 – 배낭형태만 허용(색상은 검은색), 옆으로 매는 가방 불허.

#### 2) 여학생 규정

신발 : 실외화는 운동화 또는 검정색, 흰색계통 학생화(굽은 4센티미터 미만) 실내화는 끈이 없는 흰색 운동화 또는 슬리퍼(고급품, 화려한 것은 제외)

가방 : 학생용 가방 – 배낭식만 허용(색상은 검은색), 외출용, 옆으로 매는 가방은 불허

M10 – 신발 2(부분규제)

제36조(실내외화 착용)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신도록 한다.

1. 등하교시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 하지 않는다.
2. 실내화는 실내용 백색 운동화로 통일한다.

M11 – 신발 2(부분규제)

제11조(실내화) 남, 여 학생 모두 백색 실내화를 착용한다.

신발과 가방의 경우 규제가 불필요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판단이 든다. 신발에 대한 규정들이 학습이나 생활지도 등 어떤 영역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희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정들을 제정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강요하고 있다. 청소년시기 자신의 생활 물품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누려본 학생은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생활하며, 자신과 어울리는 형태의 물건들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능력을 키

을 수 있다. 신발규정에까지 학생다운 것, 혹은 검소한 것 등의 애매모호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제반 규정에 대한 반발을 불러오며, 규정들이 가진 정당한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명쾌하고 정확한 문구로 규정을 만들었다 해도 현실에 맞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규정은 처음부터 규정이탈자를 예고한다. 신발에 대한 규정이 꼭 필요하다면 학생들과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 개정의 민주성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민주적인 제정, 개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일정부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규칙이 제정, 개정 되는 과정에서 소외되어있다. 이는 직접적 관심의 주체인 학생보다 간접적 관심의 주체인 교사가 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으로 정당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교사는 규칙을 학생에게 강압적으로 집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더 큰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규정의 제정, 개정 절차가 충분히 민주적이며 납득가능하다면 학생들도 어느 정도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표6] 개정의 민주성

(중)학교명	개정의 민주성	(고)학교명	개정의 민주성
M1	2	H1	3
M2	2	H2	3
M3	3	H3	
M4		H4	3
M5	3	H5	
M6		H6	
M7	4	H7	
M8	4	H8	3.5
M9		H9	
M10		H10	4
M11	3	H11	
M12	4	H12	3
M13	3	H13	2
M14		H14	
M15	4	H15	4
M16	4	H16	3
M17	2	H17	2

		H18	3
		H19	4

분석 대상 학교 36개교 중에서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학교는 25개교이다. 25개교 중에서 9개교(36%)는 개정과정에 학생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개정을 발의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교원이 발의하며, 생활지도협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데 참여조차 할 수 없다.

#### 〈학생생활규정 개정의 예〉

##### H13 – 개정의 민주성 2(부분규제)

제36조 (개정) 이 규정은 학생들이나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내용 및 운영 방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다. 규정의 개정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 M2 – 개정의 민주성 2(부분규제)

제64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필요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합의 절차를 거쳐 개정한다.

##### H18 – 개정의 민주성 3(많이 규제)

제56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 H10 – 개정의 민주성 4(전면규제)

제50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교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직교원 2/3 이상이 출석한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출석교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으로 얻어야 한다.

##### M8 – 개정의 민주성 4(전면규제)

제35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회의에 회부한 후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한다.

학교생활규칙 및 이의 적용을 위하여 교사의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강제보다 학생생활규칙의 재정, 개정 절차에 학생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sup>8)</sup> 이를 위해서는 학생 대표와 교사 대표가 학생생활규칙을 재정, 개정하

기 위한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효율적일 것이다.

### 3. 징계 규정

학생은 폭력, 절도, 시험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조사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존엄을 지키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의 각종 징계 규정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 국내 법률에 부합해야 하고, 조사와 징계는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학생이 감당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생활지도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집행한다. 여기서는 생활지도(선도)협의회와 징계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생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각 규정들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한다.

#### 가. 생활지도(선도)협의회

학교에서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징계 규정을 마련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학생을 징계한다. 학교에서 학생 징계와 관련된 사항은 생활지도(선도)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한다.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생활규정에 명시된 기구로서 교사들 중심으로 구성한다.

##### 〈생활지도협의회 규정의 예〉

###### H5 – 제4조 〈생활선도협의회〉

- ①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시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 학생부장,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학년부장(해당학년), 학생부교사(생활지도담당교사)로 하고, 학생부장을 간사로 하여 교감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한다.
- ③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퇴학처분에 해당되는 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 의결하여 처리한다. 단 담임교사 및 관련 교사는 필요시 의견진술, 참고인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생활지도협의회 구성원은 모두 교직원들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생활

8)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2.09.09)

15. 개정방법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특히 학생이 자신들에게 미칠 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견 존중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도 존중하여,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각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학교현실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지도는 학교, 가정, 사회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생활지도협의회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sup>9)</sup>

[표7] 생활지도협의회

학교명	생활지도협의회		학교명	생활지도협의회	
	학생, 부모 진술	재심요구		학생, 부모 진술	재심요구
M1	또는	학교장	H1	또는	학부모
M2	또는	학교장	H2	또는	학교장
M3	또는	학교장	H3	및	
M4	징계내용 없음		H4	또는	학교장
M5	또는	학교장	H5		학교장
M6	징계내용 없음		H6	및	학교장
M7			H7	또는	학교장
M8			H8		
M9			H9	필요시	학교장
M10			H10	또는	학교장
M11			H11	및	학교장
M12	학생, 학부모		H12	및	학교장
M13	또는	학교장	H13	희망시	보호자
M14	또는	학생, 학부모	H14	또는	
M15		학교장	H15	또는	학교장
M16		학교장	H16	또는	학교장
M17			H17	및	학교장
			H18	또는	학부모
			H19	허용	학교장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 학생의 변론권 보장하고 있다.<sup>10)</sup> 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서

9)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생활지도협의회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게 한 점과 동 예시안 제2조(목적) 규정에서 그 적용 범위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하고 있는 점 및,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교, 가정, 사회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생활선도협의회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10)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는 재심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sup>11)</sup> 그러나 <표7>에서 보듯이 포항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변론권과 재심청구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15개교 중 8개교(53%)는 학생이 징계를 당할 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진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학생 또는 학부모로 규정한 학교가 대부분이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을 슬로건으로 학생생활에 대한 지침서인 [2005학년도 학생 생활지도 기본 계획]에서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에서는 의견진술 기회 제공을 학생 또는 학부모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학생 및 학부모'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학생 징계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표<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05년 이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이라는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다. 둘 중 한 명의 진술로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의 징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이 자기를 충분히 변론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의 2차보고서에 대한 논평 및 견해 (CRC/C/15/Add.197)35.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학교당국은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를 결정할 때 학생의 진술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학교당국은 징계 결정에 앞서 학생에게 직접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이 변론권을 행사하는 일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등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변론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 보호자나 보조인의 동석, 학교 안팎의 조사활동 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의 보호자나 담임교사, 학생과 신뢰관계에 있는 제3자 등 학생의 의사에 따라 누구라도 보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징계시 징계 대상 학생에게 자기 이야기를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징계처분에 대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건에 자기 자신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르친다. 또 학교의 임의적인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도 있고, 징계에 앞서 자기 의견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그 학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학교행정에서 교사의 재량권 행사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좀 더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학교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재심청구권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분석대상 32개교 중에서 재심에 대한 규정이 없는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 초중등교육법 제18조2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교당국은 징계규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재심에 대한 요청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되어야 하고, 불수용 시에는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학교가 무려 9개교(28%)나 된다. 재심청구가 가능한 23개 학교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학교는 4개교(17%)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19개교(83%)는 학교장이 재심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학교는 국제인권기준과 법률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sup>12)</sup> 징계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징계 기준

징계 규정은 인권의 기준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학생,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사건 조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기구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학교당국은 징계의 기준과 내용 등을 학교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각 학교의 학생 징계 기준은 너무 방대하다. 문구의 내용도 모호한 것이 많다. 그래서 수집대상 학교의 징계 기준 중에서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해 보았다.

[표8] 학생 징계 기준

학교명	교권	학생선동, 불미스런 행동	학교명예 실추,교장 허락없이 모임참가	불온문서, 불법집회, 불량씨클	예의,바 르지 못함	학교 명	교권	학생선동, 불미스런 행동	학교명예 실추,교장 허락없이 모임참가	불온문서, 불법집회, 불량씨클	예의, 용의 바르지 못함
M1	○	○	○	○	○	H1	○	○	○	○	○
M2			별도 규정 누락			H2	○		별도 규정 누락		
M3			별도 규정 누락			H3	○	○	○	○	○
M4			징계 규정 누락			H4	○		별도 규정 누락		
M5	○	○	○	○	○	H5	○	○	○	○	○
M6			징계 규정 누락			H6	○	○	○	○	○
M7	○	○		○		H7	0				
M8	○	○	○	○		H8	0				
M9	○	○	○	○	○	H9	○	○	○	○	○
M10	○	○	○	○	○	H10	○				
M11	○	○	○	○		H11	○	○	○	○	○
M12	○	○	○	○	○	H12	○	○	○	○	○
M13			별도 규정 누락			H13	○	○	○	○	○
M14	○	○	○	○	○	H14	○	○	○	○	○

1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M15	○	○	○	○	○	H15	○	별도 규정 누락			
M16	○	○	○	○	○	H16	○	○	○	○	○
M17	○	○	○	○	○	H17	○	○	○	○	○
						H18	○	별도 규정 누락			
						H19	○	○	○	○	○

교권모독은 조사대상 학교 32개교 모두 징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징계 종류도 교내봉사에서 퇴학까지 있는 항목이다. 그런데 교권모독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모호하다. 어느 정도까지가 교권모독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모독과 모독 아님을 판단하는 일정한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교사의 기준으로 학생의 행동을 판단하게 된다. 폭력에 의한 모독 행위, 혹은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 등 교권모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학생선동', '불미스러운 행동'은 24개로 확인 가능한 모든 학교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불미스러운 행동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옳겠다. 이에 비해 학생선동은 학내에서 규정이나 지도에 문제제기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학생선동으로 규정한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관리자나 교원들이 징계를 결정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확산시키고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보장하는 형태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학교장 허락 없이 모임 대회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것은 학생의 외부 단체 활동을 포괄적으로 단속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학교에서 허락한 단체 이외의 외부단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올바름에 대한 기준을 학교만이 가지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 또 학생이 학교 밖이나 가정에 있을 때에도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종교나 취미, 관심 있는 사회 활동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에서 활동하다 문제가 된 경우 외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상당부분 징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서 새로운 징계를 받는다면 학생은 이중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불온 문서, 불법 집회, 불량 서클에 가입한 경우도 24개로 확인 가능한 모든 학교에서 징계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불온 문서와 불법 집회, 불량 서클에 대한 기준도 보기에 따라서 다른 관점이 가능하다. 따라서 불온 문서와 불법 집회, 불량 서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집회, 시위는 학생이 사회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예의나 용의가 바르지 못함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예의나 용의 문제는 학생과 교사의 가치관이 서로 다름을 인정한 가운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내용을 징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은 징계 기준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다. 이것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징계규정을 과감히 삭제하고 학생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징계에 대한 규정은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또 기준이 모호한 것이 많다. 징계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징계의 규정을 늘리기보다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학생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체벌 규정

체벌이란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간접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고통을 주는 벌로 가정과 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체벌은 학생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므로 법치주의에 위반한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수단으로 체벌이 허용되는가? 허용된다면 그 한계는 무엇인가의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늘 겪고 있는 문제이며,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이다.

[표9] 체벌 규정

(중) 학교명	체벌 규정	(고) 학교명	체벌 규정
M1	체벌 기준 및 대상 명시	H1	
M2	체벌 기준 및 대상 명시	H2	체벌 기준 및 대상 명시
M3	체벌 기준 및 대상 명시	H3	체벌 금지 규정
M4		H4	체벌 금지 규정
M5	체벌 기준 및 대상 명시	H5	누락
M6		H6	누락
M7		H7	누락
M8	체벌 기준 및 대상 명시	H8	체벌 금지 원칙
M9		H9	간접 체벌 명시
M10		H10	체벌 금지 원칙
M11	간접체벌 명시	H11	
M12		H12	
M13	체벌 기준 및 대상 명시	H13	가능한 금지 원칙
M14		H14	누락
M15		H15	체벌 기준 및 대상 명시
M16		H16	체벌 금지 원칙
M17	체벌 기준 및 대상 명시	H17	

	H18	체벌 금지(봉사활동대치)
	H19	

### 체벌에 대한 찬·반 논거와 법적 논리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보자.

체벌에 긍정적인 교육학자들은 체벌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기 규율을 학습시킬 수 있고, 학생의 사회화를 크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체벌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며, 학교의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 수단이 된다고 본다. 반대로 체벌을 부정적으로 보는 교육학자들은 체벌이 가지는 효과는 일시적이며, 학생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탐구정신을 억압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를 해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체벌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체벌은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된다. 다만, 형법 제20조에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체벌이 정당행위라고 하려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교육행위에 따르는 업무상의 행위여야 하며, 또한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학생체벌 관련 현행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또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체벌의 정당행위를 주장하려면 “교육상 불가피” 하였다는 것을 가해자가 증거를 들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체벌 규정의 예〉

#### H2 – 체벌 기준 및 대상 명시

제54조(학생체벌) 학생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교육법이나 신체적으로 가하는 벌 이외의 방법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의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대상 학생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체벌은 금하고 부득이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 되며, 체벌기준을 따라야 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 학생에게 체벌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55조〈체벌대상〉 체벌은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고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5. 기타 학생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 H13 – 가능한 금지 원칙

#### 제4장 학생 체벌

제19조(목적) 학생들에게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 생활 습관이나 예절 등 바른 생활 태도를 갖도록 하고, 아울러 건전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근거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할 수 있다.

#### 제20조(방침)

- ① 학생 선도협의회 제15조 1항의 현장 선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해당 교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체벌을 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유형의 잘못을 반복하여 어기는 경우와 같이 체벌이 교육적 목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체벌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체벌을 가할 수 있다.
- ③ 체벌 중 학생이 통증을 호소하며, 체벌 중지를 요구하면 체벌을 중지하고,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도록 한다.

#### 제21조(원칙)

- ① 체벌은 가능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②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은 학생을 지도하여야 할 당사자인 교사가 행한다.
- ③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상 체벌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1.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없이 반복하여 어기는 경우.
2. 학습 태도가 불성실·태만하여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3.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물품 드에 손해·손상을 끼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4. 선도협의회에서 징계 처분이 결정된 학생이 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기타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도구) 지름 1센티미터 이하, 길이 60센티미터 이하의 둥글고 매끄러운 회초리에 한 한다.

#### 제23조(절차)

- ① 상담 또는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 행동에 대한 교정 노력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② 학교장 또는 교감의 사전 구두 허락을 받는다.
- ③ 체벌 전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④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사가 시행한다.
- ⑤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연계 지도한다.

#### 제24조(유형)

- ① 체벌은 가벼운 신체적 고통을 주는 기합(엎드려 뻗쳐있기, 엎드려 팔 굽혀 펴기, 무릎 꿇고 앉아 있기, 무릎 꿇고 앉아서 손들게 하기, 오리 걸음, 제자리 앉았다 일어나기, 일정한 거리를 뛰어 하기, 청소하기 등) 또는 회초리형의 간단한 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 ② 매를 대는 부위는 신체 중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중 한 곳으로 한다.
- ③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간단한 막대기를 제외한 도구 이용 체벌
  2. 손, 발로 가하는 체벌
  3. 기타 지나치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
  4. 일부 학생의 잘못에 대한 단체 기합

#### 제25조(체벌 불응시의 조치)

- ① 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칙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를 가할 수 있다.

#### 제26조(체벌 후의 지도)

- ① 체벌 교사는 체벌 후 학생이 인격적으로 모멸감이나 자괴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생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행위 준거의 토대가 형성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인 지도 조언을 한다.
- ③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통하여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강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고등학교 19개 학교 중 4개 학교는 자료수집에서 누락되었고, 5개 학교는 체벌 규정이 없다. 또 5개 학교는 체벌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5개 학교는 체벌 규정을 두고 있다. 체벌규정을 두고 있는 5개 학교 중에서 1개 학교는 체벌의 목적과 방침, 원칙, 절차, 유형까지 상세하고 실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학교 17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체벌 규정이 없으며, 7개 학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간접체벌을 명시한 학교가 하나 있다. 체벌 규정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학교가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생활규정에 있는 체벌 규정을 근거로 하여 체벌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적절하게 체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보인다.

체벌의 경우는 법에 의해 판결을 받은 사건이 여러 개 있다. 체벌에 관한 판례 몇 개를 간단히 언급하면, 담임교사가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에게 등을 3, 4번 때렸으나 신경증

성 우울증이 있다는 진단으로 입원한 사건에서 담임교사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 상규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업무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음주·흡연을 하고 폭행을 휘두른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대걸레 자루로 체벌하던 중 피하다가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육상 필요에 의한 체벌을 인정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고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체벌을 인정하는 경우에 사회상규(社會常規)의 판단이 중요한데, 그 기준은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한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相當)한가,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에 균형성을 유지하는가, 긴급성을 요하는가, 다른 수단은 없었는가(보충성원리) 등이다.

대법원은 여자중학교 체육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과 모욕적인 언사가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건에서 초·중등교육법상의 체벌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sup>13)</sup>

그 동안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벌의 한계는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어야 하므로 화를 내는 등 개인의 감정표시가 있으면 안 된다. 또 상대방의 성별, 나이,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체벌의 방법이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상당한 상처가 남는 과도한 체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체벌 규정이 있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규정으로는 교육적으로 체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체벌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렵다.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도 교사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체벌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3)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도에 있어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되어 있는바,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의 필요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어서,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 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공 2004. 7. 15(206)1187

## 5. 통신 규정

현재 경북 포항지역의 많은 중·고등학생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한다. 학생의 안전과 원활한 연락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주는 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휴대를 금지하는 학교가 있다.

[표10] 교내 휴대폰 사용

학교명	교내 휴대폰 사용			학교명	교내 휴대폰 사용		
	교내휴대 금지	사용금지	가능한 금지		교내휴대 금지	사용금지	가능한 금지
M1		○		H1			○
M2		○		H2			○
M3	○			H3	○		
M4	○			H4			○
M5		○		H5			
M6	○			H6	○		
M7				H7			○
M8				H8			○
M9	○			H9			
M10	○			H10		○	
M11				H11			
M12				H12		○	
M13		○		H13			
M14	○			H14	○		
M15	○			H15			○
M16		○		H16		○	
M17				H17		○	
				H18			○
				H19			

중학교의 경우 17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47%)가 교내에서 휴대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5개 학교는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4개 학교는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등학교의 경우 19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15.8%)가 교내에서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 4개 학교(21%)는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7개 학교는 점심시간 등 규정된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교내 휴대폰 사용 규제의 예〉

M10- 교내휴대금지

제37조(소지품)

1. 휴대폰은 교내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2. 디지털 카메라 또는 값비싼 MP3 player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당국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물품을 특정하여 소지를 금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학교당국은 휴대전화, 사진기, 음악 재생기(MP3 등), 게임기 등에 대한 소지를 아예 금지시키기보다는 합당한 이용 규정을 두는 쪽을 택해야 한다.” 고 결정하였다. 학생이 소지한 물품을 압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확보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다.

## III. 학생자치활동 규정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교육 주체로서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모임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기도 하다. 학생은 또한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적극 보장받아야 한다.<sup>14)</sup>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학생자치활동은 유명무실하다. 이 장에서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규정들을 분석하여 현재 모습들을 살펴보고 학생자치활동 규정의 올바른 상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규정 중에서 학생회의 성격, 학생회의 위상, 학생회 회장단 선거 규정, 학생회의 기능 및 예산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4)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1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 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1. 학생회 활동

### 가. 학생회 활동의 성격

경북 포항의 경우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많다. 이런 학생관은 학생회에 대한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표11] 학생회의 성격

학교명	학생회 활동 성격		학교명	학생회활동 성격	
	자치활동	특별활동		자치활동	특별활동
M1	○		H1	○	
M2	○		H2	○	
M3	○		H3		○
M4			H4		○
M5		○	H5		○
M6	○		H6		○
M7			H7		○
M8	○		H8		○
M9	○		H9		○
M10		○	H10		○
M11	○		H11		○
M12	○		H12	○	
M13	○		H13		○
M14		○	H14	○	
M15		○	H15	○	
M16		○	H16		○
M17	○		H17	○	
			H18	○	
			H19		○

대학교의 경우 학생회 활동을 학생자치활동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회 활동을 특별활동으로 보는 시각과 자치활동으로 보는 시각이 함께 존재한다. 중학교의 경우 조사대상 17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59%)는 자치활동으로 규정하고, 5개교(29%)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회 활동을 규정한다. 성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2개 학교는 활동내용과 위상으로 볼 때,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조사대상 19개 학교 중에서 7개교(37%)가 학생회 활동을 자치활동으로 규정하고, 12개 학교(63%)

가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학생회 활동을 학생자치활동으로 규정한 학교나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한 학교나 규정의 하위 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

### 〈학생회 활동의 성격 규정 예〉

#### M15 – 특별활동

제1조(목적) 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H12 – 자치활동

제1조(목적)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회는 학생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회의 활동들은 학생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교의 규정들을 개정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생회 활동은 자치가 보장되는 형태로 학교에서 지원하는 특별활동의 개념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나. 학생회의 위상

학생의 자치활동과 참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공식적인 학생 참여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모여 활동할 공간과 자치 활동을 홍보할 공간도 마련되어야 하고, 자치와 참여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포항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규정들을 두어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 (1) 학생회 통제 규정

[표12] 학생회 통제 규정

학교명	사전사후 지도여부	최종 승인	학교윤영 참여금지	정치활동 금지	학교명	사전사후 지도여부	최종 승인	학교윤영 참여금지	정치활동 금지
M1	10	학과장	○		H1		학과장		생활 선도협
M2	10	학과장	○	○	H2		학과장		○
M3	10	학과장			H3	11	학과장	○	○

M4	10			H4	11	학교장	○	○
M5	10			H5	11	학교장	○	○
M6	10			H6	11		○	
M7	11	○	○	H7	11		○	○
M8	10			H8	11	학교장	○	○
M9	10			H9	11			○
M10	11	○		H10			○	
M11	10			H11	11	학교장	○	○
M12	10	학교장		H12	11	학교장		○
M13	10	학교장		H13	11	학교장		○
M14	10	학교장		H14				
M15	10			H15	11			학생회
M16	10	학교장	○	H16	11		○	생활 선도협
M17	10	학교장		H17	10	학교장		○
				H18	10	학교장		생활 선도협
				H19	11			

\* 사전지도 :10, 사전, 사후지도:11

학생회에서 다룰 안건을 사전이나 사후에 지도받는 규정, 학교행정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의결된 내용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규정 등은 학생회 조직을 통제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안건에 대한 사전·사후 지도는 조사대상 36개 학교 중에서 사전에 지도를 받아야 하는 학교가 18개 학교(50%), 사전·사후 모두 지도를 받아야 하는 학교가 14개 학교(39%), 사전·사후 지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학교가 4개 학교이다. 학교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사전·사후 승인 절차로 인해 학생회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도교사나 지도위원회의 역할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 〈사전·사후 지도 규정의 예시〉

##### H11 -사전·사후 지도

##### 제5장 지도위원회

##### 제17조 <기능>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지도 사항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② 전 항의 지도는 사전·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 H12 - 사전지도

제31조<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학생회가 학교 행정이나 학교장의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다루는 것을 금지한 학교는 전체 36개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36%)이다. 나머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예상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등 학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안건이 다루어질 때, 학교당국은 미리 안건을 공개하고 학생대표의 참석을 요청하여 학생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대표의 참여는 의결과정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2) 정치활동 금지 규정

학생은 말이나 글, 예술, 매체, 몸 등 자기가 선택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생활양식을 외부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명시적이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학생의 표현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통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표현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표10>에서 보듯이 포항지역 중고등학교 36개 학교 중 20개 학교가 학생회 회원들의 정치에 관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예〉

##### H12 -

제4조<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sup>15)</sup>는 나이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각 학교의 학생자치활동 규정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활동은 개인의 ‘사회 계급 계층 및 조직의 일원으로 자신의 이해나 목적에 관계하는 모든 사회적 행위’로 규정했을

15)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때 모든 나이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단지 정당 활동의 문제이면 학생은 정당원이 될 수 없는 현재의 조건에서 범으로도 충분하다.

정치는 개인이 사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교는 그런 행동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가) 인권, 평화, 통일, 생태, 양성평등 등 우리사회의 의제의 다양화로 청소년의 관심을 표출시킬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나)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아지면서 특수한 사정으로 1년만 늦어도 고등학생은 투표권을 가질 수도 있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항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sup>16)</sup>에서도 인권 침해의 요소를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학교에서도 집회나 시위는 학생이 사회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학생의 시민적 역량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학생회 규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2. 회장단 입후보자 자격

학교는 학생대표의 입후보 자격에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부당한 제한을 둘 수 없다. 부당한 제한으로는 교사의 추천, 성적, 징계 경력, 품행, 종교, 가정의 경제형편 등이 포함된다. 어떤 후보자가 대표로 적합한지는 유권자인 학생이 판단할 몫이다. 또한 학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16)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2002.09.09)

### 10. 금지활동

〈예시안〉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 가입금지, 정치에 관한 활동 금지.

#### 〈평가〉

- 인간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질서와 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되어서는 안 됨. 또한, 학생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임.
- 정치란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하여야 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임. 학생은 발달과정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 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에 그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선거여력을 낮추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하여 동 규정은 삭제하여야 할 것임.

[표13] 학생회 회장단 입후보자 자격 제한

학교명	회장단 피선거권	학교명	회장단 피선거권
M1	3	H1	3
M2	3	H2	3
M3	3	H3	3
M4	3	H4	4
M5	3	H5	4
M6	3	H6	4
M7	3	H7	4
M8	3	H8	3
M9	3	H9	4
M10	4	H10	
M11	3	H11	3
M12		H12	3
M13		H13	4
M14	3	H14	4
M15	4	H15	4
M16	3	H16	4
M17	3	H17	3
		H18	3
		H19	4

\* 개방:1, 모범생:2, 징계 없는 모범생:3, 성적 포함 모범생:4

### H5 – 4 (성적포함 모범생)

#### 제10조(임원 선출 및 자격)

2. 학생(부)회장 선출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 전과목 80%가 4등급(직전 학년도 1학기말 성적기준) 이내이며, 통솔력 있는 자
- (3)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경북 포항의 중·고등학교는 학생회 회장단 입후보 자격 제한이 엄격하다. 품행이 바르고 모범생이라는 기준은 어른들의 가치 기준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 자신의 상식과 판단으로 선택 할 문제를 아예 출마부터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사면 규정이 없는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현실에서 한 번 징계는 영원한 권리 제한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회장단 입후보자 자격에 성적 제한을 두는 것은 학생에게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

요소이다. 학생 대표 선거에서 다수의 학생이 입후보자가 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대표로서 뛰어난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학생회의 역할

학생회를 학생자치활동으로 보거나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보거나 학생회의 기능과 역할은 대동소이하다. 학교에 따라 학생회 사업으로 규정하기도하고, 협의·지원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음의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표14] 학생회 사업

학교명	학예활동	특기취미신장	봉사활동	재난방지	지역문화계승	정서함양·심신수련	기타	학교명	학예활동	특기취미신장	봉사활동	재난방지	지역문화계승	정서함양·심신수련	기타
M1	○	○	○					H1	○	○	○				
M2	○	○	○					H2	○	○	○				
M3	○	○	○	○	○	○		H3	○	○	○	○	○	○	○
M4	○	○	○	○	○	○		H4	○	○	○	○	○	○	○
M5		○	○	○	○	○		H5		○	○	○	○	○	○
M6		○	○	○	○	○		H6		○	○	○	○	○	○
M7		○	○	○	○	○		H7		○	○	○	○	○	○
M8	○	○	○	○	○			H8	○	○	○	○	○		
M9	○	○	○	○	○	○		H9	○	○	○	○	○	○	○
M10	○	○	○			○		H10	○	○	○				○
M11	○	○	○	○				H11	○	○	○	○			
M12	○	○	○	○	○	○		H12	○	○	○	○	○	○	○
M13	○	○	○		○	○		H13	○	○	○		○	○	
M14	○	○	○		○	○		H14	○	○	○		○	○	
M15	○	○	○	○	○	○		H15	○	○	○	○	○	○	
M16	○	○	○	○	○			H16	○	○	○	○	○		
M17	○	○	○	○	○	○		H17	○	○	○	○	○	○	
								H18		○	○	○	○	○	○
								H19	○	○	○		○	○	

#### 〈학생회 협의 지원 사항 예〉

제6조(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① 학예, 체육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② 정서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③ 학교의 전통, 향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④ 각종 봉사활동
- ⑤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지원 활동
- ⑥ 기타 학칙 및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학생자치활동을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취미나 특기 신장의 일환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굳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회를 조직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학생회가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민주적,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 \*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 학생회칙,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
- \*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 \*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 \*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 \* 학생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 \*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 \*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학생자치활동의 강화는 학생생활규정 자율 제정을 위한 선행 과제로 볼 수 있다. 현재 학생회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이나, 학교운영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사실상 없다.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인권 또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 교사에 의해 이끌려 가는 교육보다는 스스로 형성해 가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이러한 자치활동을 통해 자율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학생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회를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기구로 규정하고,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생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 IV. 외국의 학교생활규정<sup>17)</sup>

외국 학교들의 학교생활규칙 내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통제 중심의 학교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랜 유교적 전통을 근간으로 하는 중국, 대만은 물론, 학교를 획일적으로 운영해 온 일본의 경우, 학교 규칙에 상세한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미국, 캐나다, 호주 역시 금지 조항들이 많다. 이러한 성격은 종립학교나 사립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설립별에 따라 별 차이 없이 통제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학생들의 인권을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간의 대립이 우리에 비해 적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간의 대립이 금기 위주의 통제 성격을 띤 학교생활 규정 자체의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규정들은 다른 나라의 학교규정들에 비해 상세하지 못하다. 바로 이것이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허용과 규제의 범위를 둘러싸고 학생과 교사 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외국 학교의 생활규정들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상과 그릇된 행동을 자제하게 하기 위한 별의 명백한 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게 한다.

분석 결과, 외국의 학교생활규정은 규제하는 내용들도 상세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징계시 소명 절차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다. 뿐만 아니라 징계 이후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대만의 경우, 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 행동들을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교유할 것인가를 위한 예의범절교육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 놓을 정도다.

학교생활규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도할 때 생겨나는 문제점은 두발처럼 학생들은 명백하게 인권침해하고 생각하는 규정들을 지도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학생과 교사의 마찰은 두발을 규제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생각과 자율로 인정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처벌과도 관련이 깊다. 여러 종류의 처벌 가운데 특히 체벌이 문제이다. 아직까지는 교사의 체벌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는 교육적 방편으로 행하였다며 하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체벌의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들이 필요하나, 이것에 대한 규정 또한 상세하게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상세화의 필요성은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캐나다, 호주, 중국의 경우, 교사들은 체벌하지 않는다. 이는 구태여 체벌하지 않고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학교생활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17) 조금주, 「중·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학생 인권 토론회 자료집, 2006. 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체벌로서 학생들을 다스리려는 교사의 인식도 문제이지만,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학생들의 실천 의식도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이 필요하다. 또 교사의 체벌이 필요 없어도 다른 유형의 규제들을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도 학교생활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면 다른 처벌을 받는 대신 몇 대의 체벌로 용서받고 넘어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 V. 마무리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받아 본 경험이 없으면 주체적인 삶의 태도가 형성되기 어렵고, 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생활규정의 목적은 사회질서 유지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인 청소년의 이익과 생존 발달을 보장하는 방향을 기술되어야 하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가 분명히 알게 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용의 규정 중 두발 규제는 교사와 학생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지나친 두발 규제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것이 아니라 학생이 누려야 할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가야 한다.

복장과 장식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고 가장 규제가 심하다. 학교는 학교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한 복장과 몸가짐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요구해야 한다.

신발과 가방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불필요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제반 규정에 대한 반발을 불러오며, 규정들이 가진 정당한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게 만든다. 신발에 대한 규정이 꼭 필요하다면 학생들과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민주적인 제정, 개정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일정부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규칙이 제정, 개정 되는 과정에서

소외되어있다. 학생생활규정의 준수는 법적 강제보다 규정의 재정, 개정 절차에 학생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대표와 교사 대표가 학생생활규정을 재정, 개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효율적이다.

징계 과정에서도 학생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포항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변론권과 재심청구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변론권 보장은 학교의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르치는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또 현재 학교장이 행사하는 징계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학생이나 학부모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징계 기준에 대한 규정은 너무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또 기준이 모호한 것이 많다. 징계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징계의 기준을 늘리기보다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학생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권모독은 모독을 판단하는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가능성이 있다. 교권모독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 불미스러운 행동과 학생선동은 너무 포괄적인 기준이므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확산시키고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보장하는 형태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학교장의 허락없이 모임참가에 대한 기준은 외부단체에 대한 판단을 학교가 독점하고 있으며, 학교 이외의 장소에까지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오히려 학생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교육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불온 문서와 불법 집회, 불량 서클에 대한 기준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집회, 시위는 학생이 사회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예의나 용의 문제는 학생과 교사의 가치관이 서로 다름을 인정한 가운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징계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적으로 올바른 행위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령은 “교육상 불가피” 하였을 경우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 학생생활규정의 체벌 규정으로는 교육적으로 체벌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도 교사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도 체벌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거나 휴대를 금지하는 학교가 있다. 이것은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하는 것이다. 휴대폰 사용을 자율로 하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 물건에 대한 통제 능

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이다. 학생자치활동은 교육 주체로서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시에 모임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기도 하다. 경북 포항의 경우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학생회 활동을 특별활동으로 보는 시각과 자치활동으로 보는 시각이 함께 존재며 학생자치활동과 참여를 위한 여건이 열악하다. 학생회에서 다룰 안건을 사전이나 사후에 지도받는 규정, 학교행정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 의결된 내용을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규정 등은 학생회를 통제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지도위원회는 학생회에서 다룰 안건이나 의결한 사항을 사전·사후에 지도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자치활동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회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개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활동인 집회나 시위는 학생이 사회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 인식해야 한다. 학생의 시민적 역량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학생회 규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자치활동의 강화는 학생생활규정 자율 제정을 위한 선행 과제로 볼 수 있다. 현재 학생회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이나, 학교운영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사실상 없다.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의 인권 또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학생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회를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기구로 규정하고,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생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

서구의 경우도 학교생활 규정에 금지 조항들이 많다. 외국의 경우 학생들의 인권을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간의 대립이 우리에 비해 적다. 분석 결과, 외국의 학교생활규정은 규제하는 내용들도 상세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징계시 소명 절차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다. 뿐만 아니라 징계 이후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을 두고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이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학생생활규정이 필요하다. 교사

의 체벌이 필요 없어도 다른 유형의 처벌들을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도 학교생활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어겼을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지켜진다면 학생인권존중은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나아가 교사의 인권도 제대로 존중받을 것이다.

## 경북지역 학생인권 설문조사 보고서

경북지부 설문조사팀

### 1. 조사의 목적

이 조사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북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인권과 관련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해,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상 생활 관련', '학생인권의식 관련', '학생자치활동 관련', '학생인권신장 방안관련'의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내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 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학교 내의 규정들과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인권 개선에 목적이 있다.

### 2. 조사의 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경북지역 중·고등학교 학생(포항, 안동, 김천, 의성, 고령)
조사기간	2008년 11월 6일 – 11월 12일
표본크기	963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할당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3.1%P

### 3. 표본의 특성

변인	빈도	%
성별	여	420
	남	543
급별	중학교	423

	전문계고등학교	118	12.3%
	인문계고등학교	422	43.8%
지역	읍면	285	29.6%
	도시	678	70.4%
합계		963	100.0%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963명이며, 성별로는 여학생 420명, 남학생 543명으로 남학생이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중학교생 423명, 고등학생 540명으로 고등학생이 많았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이 678명으로 읍면지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 4. 설문조사지 배부 및 회수, 자료처리

##### 가. 설문지 배부 및 회수

이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2006년 전교조 경북지부에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첨가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였고,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하여 사용하였으며, 표집된 학교별로 우편을 통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만나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 나.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EDITING  $\Rightarrow$  CODING/PUNCHING  $\Rightarrow$  CLEANING의 과정을 거쳐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백분율을 계산한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인구사회학적 변수별로 분석을 하여 제표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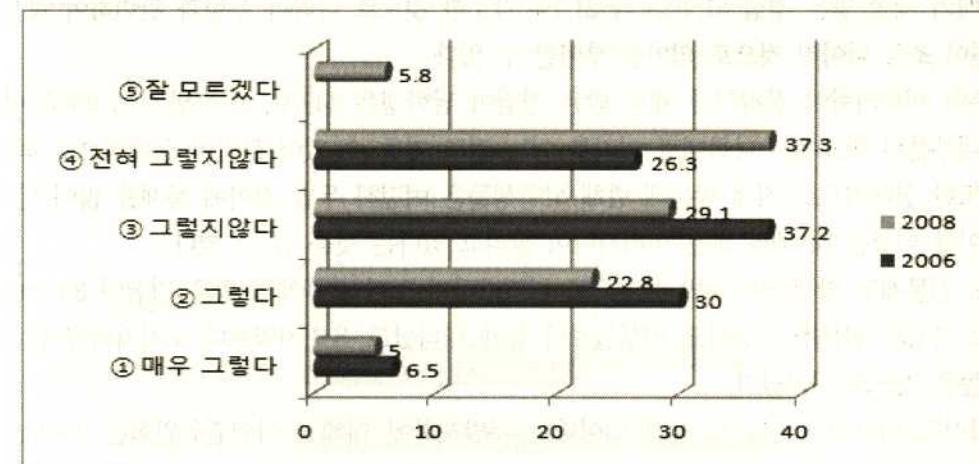
#### 5. 문항별 분석

##### 가. 일상행할 관련

##### 문1)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변 인	문 항	1-1.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성별	여	9	2.1	78	18.6	135	32.1	178	42.4	20	4.8	420										
	남	39	7.2	142	26.2	145	26.7	181	33.3	36	6.6	543										
급별	중학교	25	5.9	111	26.2	117	27.7	135	31.9	35	8.3	423										
	전문계고	2	1.7	22	18.6	33	28.0	56	47.5	5	4.2	118										
지역	인문계고	21	5.0	87	20.6	130	30.8	168	39.8	16	3.8	422										
	읍면	18	6.3	59	20.7	78	27.4	108	37.9	22	7.7	285										
	도시	30	4.4	161	23.7	202	29.8	251	37.0	34	5.0	678										
	합계	48	5.0	220	22.8	280	29.1	359	37.3	56	5.8	963										

[2006년 2008년 비교]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27.8%로 2006년 조사 때의 36.5%보다 낮게 나타나 2006년 보다는 성적을 이유로 한 체벌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학생 66.3%보다는 훨씬 적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3.4%로 여학생의 20.7%보다 12.7% 높게 나타나 남학생이 체벌을 받은 경험이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중학교 32.1%, 인문계고등학교 25.6%, 전문계 고등학교 20.3%의 순으로 나타나 중학생들이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더 많이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27.0%이고 도시지역은 28.1%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문2) 학교에서 두발관계로 머리카락을 잘리거나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문항		1-2. 학교에서 두발관계로 머리카락을 잘리거나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변인	빈도 %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르 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3	3.1%	37	8.8%	124	29.5%	236	56.2%	10	2.4%	420
	남	106	19.7%	135	25.0%	110	20.4%	168	31.2%	20	3.7%	539
급별	중학교	43	10.2%	73	17.4%	100	23.8%	185	44.0%	19	4.5%	420
	전문계고	13	11.0%	19	16.1%	24	20.3%	60	50.8%	2	1.7%	118
	인문계고	63	15.0%	80	19.0%	110	26.1%	159	37.8%	9	2.1%	421
지역	읍면	32	11.2%	48	16.8%	75	26.3%	116	40.7%	14	4.9%	285
	도시	87	12.9%	124	18.4%	159	23.6%	288	42.7%	16	2.4%	674
합계		119	12.4	172	17.9	234	24.4	404	42.1	30	3.1	959

두발 불량으로 머리카락을 잘리거나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30.1%로 2006년 조사 때의 체벌 받은 경험 51.7%보다 2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두발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조금 나아진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머리카락이 잘리거나 체벌 받은 경험이 남학생은 44.7%, 여학생은 11.9%로 여학생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름대로 머리를 어느 정도 기를 수 있어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고 체벌 또한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데 반해 남학생들은 여전히 두발 길이에 통제를 많이 받고 있고 이를 어겼을 때 체벌 또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문계고 학생들이 두발 불량으로 머리카락이 잘리거나 체벌 받은 경험이 34.0%로 중학교 학생과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두발제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 27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인간이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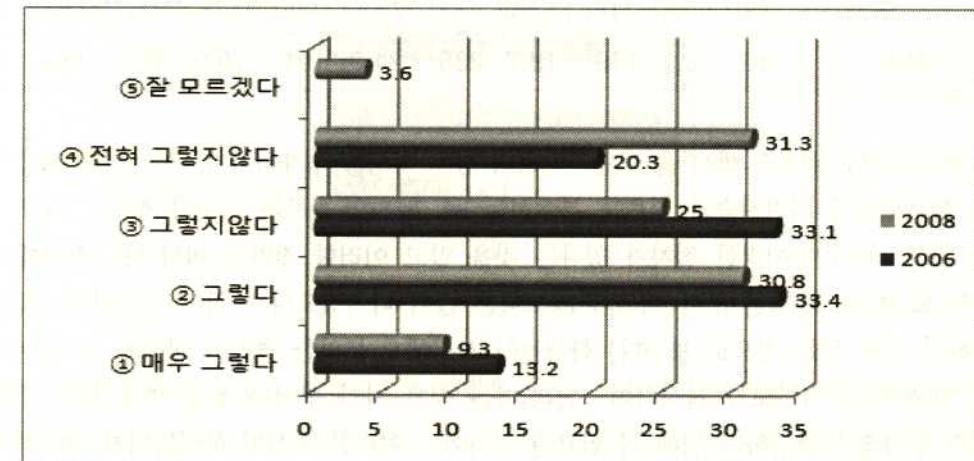
두발이 불량하다고 교사가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것은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학교에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두발 및 복장문제는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원들의 지도방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문3) 학교에서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문항		1-3. 학교에서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변인	빈도 %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르 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29	6.9%	124	29.6%	105	25.1%	151	36.0%	10	2.4%	419
	남	60	11.1%	171	31.7%	135	25.0%	149	27.6%	25	4.6%	540
급별	중학교	33	7.8%	121	28.7%	99	23.5%	146	34.7%	22	5.2%	421
	전문계고	10	8.5%	24	20.3%	31	26.3%	49	41.5%	4	3.4%	118
	인문계고	46	11.0%	150	35.7%	110	26.2%	105	25.0%	9	2.1%	420
지역	읍면	21	7.4%	72	25.3%	78	27.4%	102	35.8%	12	4.2%	285
	도시	68	10.1%	223	33.1%	162	24.0%	198	29.4%	23	3.4%	674
합계		89	9.3	295	30.8	240	25.0	300	31.3	35	3.6	959

[2006년 2008년 비교]



복장 불량으로 체벌 받은 경험은 40.1%로 2006년 조사 때의 46.6%보다 낮게 나타났다. 복장 불량으로 체벌 받은 경험 중 남학생이 42.9%로 여학생 36.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2006년의 29.2%보다 7.3% 더 높게 나타나 시대의 발달에 따른 표현의 욕구로 인해 여학생들의 복장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 고등학교 46.7%, 중학교 36.5%, 전문

계 고등학교 28.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이 43.2%로 읍면지역 29.7%를 훨씬 앞선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지역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두발 문제나 복장 문제에 대한 욕구가 높고 그 만큼 학교로부터 차별과 같은 제재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나 도시지역의 학생들에게서 두발·복장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많은 것은 성적이 모든 것을 우선하는 학벌지상주의 속에 다른 가치들이 부정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문4) 별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의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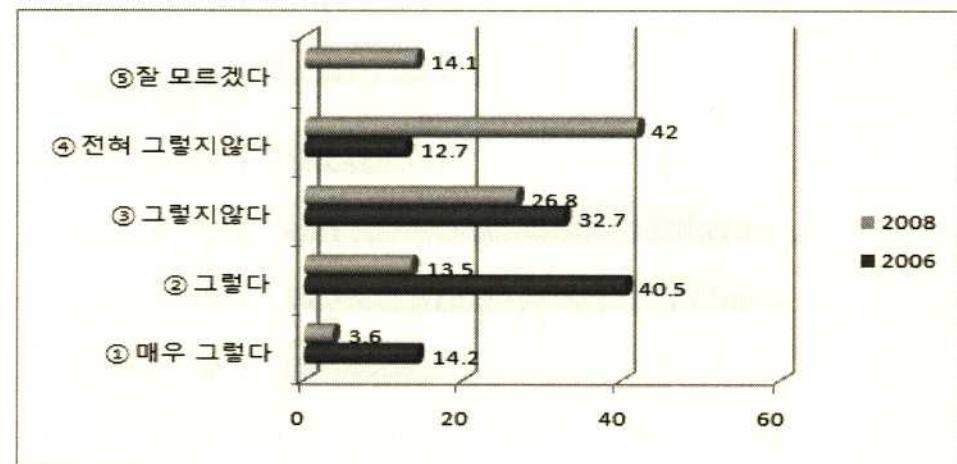
문항		1-4. 별이나 징계를 받을 때 자신의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변인	문항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않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 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6	1.4%	62	14.9%	113	27.1%	79	18.9%	157	37.6%	417
	남	24	4.4%	117	21.6%	125	23.1%	112	20.7%	163	30.1%	541
급별	중학교	16	3.8%	86	20.4%	101	24.0%	90	21.4%	128	30.4%	421
	전문계고	7	5.9%	12	10.2%	25	21.2%	19	16.1%	55	46.6%	118
	인문계고	7	1.7%	81	19.3%	112	26.7%	82	19.6%	137	32.7%	419
지역	읍면	17	6.0%	61	21.5%	52	18.3%	55	19.4%	99	34.9%	284
	도시	13	1.9%	118	17.5%	186	27.6%	136	20.2%	221	32.8%	674
합계		30	3.1	179	18.7	238	24.8	191	19.9	320	33.4	958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징계를 하는 경우는 21.8%로 2006년 조사 때의 7.1%보다는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참석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자기 방어를 위한 변론권을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나 이러한 사실이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학생들의 중요한 권리를 빼앗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교육하여 학생들이 변호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문5) 학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다.

변인	문항	1-5. 학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다.										반도 합계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 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6	1.4%	43	10.3%	143	34.1%	184	43.9%	43	10.3%	419
	남	28	5.3%	84	16.0%	110	21.0%	212	40.5%	90	17.2%	524
급별	중학교	19	4.5%	55	13.1%	111	26.4%	181	43.0%	55	13.1%	421
	전문계고	7	5.9%	20	16.9%	31	26.3%	44	37.3%	16	13.6%	118
지역	인문계고	8	2.0%	52	12.9%	111	27.5%	171	42.3%	62	15.3%	404
	읍면	24	8.5%	71	25.0%	67	23.6%	83	29.2%	39	13.7%	284
	도시	10	1.5%	56	8.5%	186	28.2%	313	47.5%	94	14.3%	659
	합계	34	3.6	127	13.5	253	26.8	396	42.0	133	14.1	943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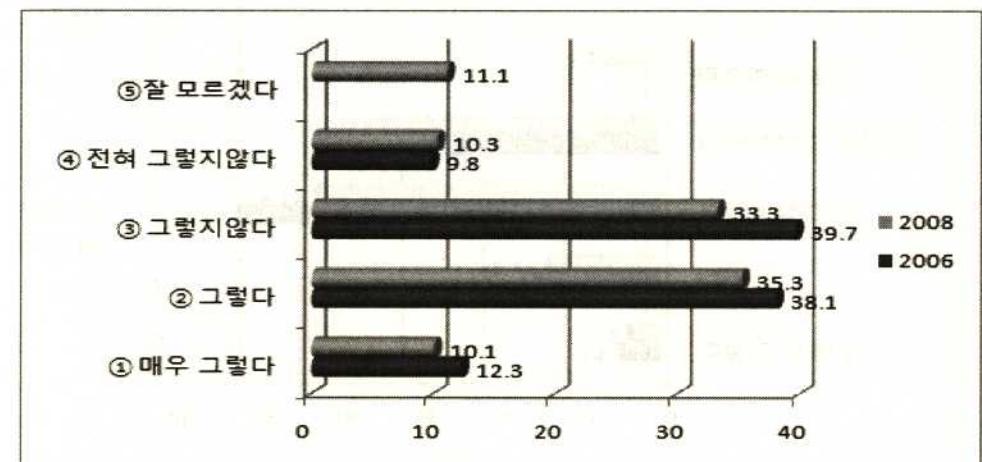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차별 문제는 전체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는 비율이 82.9%로 차별 받고 있다는 비율 17.1%보다 더 많이 나왔으며, 여학생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는다는 비율이 11.7%이고 남학생은 21.3%로 남학생이 차별 받고 있다는 의식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이거나 구조적 차별(학생회 구성이나 교육여건 지원 등)에 따른 피해의식이라기보다는 주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즉 상대적으로 더 산만하고 활동적인 남학생보다 온순하고얌전한 여학생들에게 교사들은 말이나 태도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체벌도 여학생에게는 잘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11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학생 징계 때에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육체적 체벌을 금지하도록 하고,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5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6)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자주 하신다.

변 인	문 항	1-6.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자주 하신다.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 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40	9.5%	150	35.8%	135	32.2%	46	11.0%	48	11.5%
	남	57	10.6%	187	34.8%	183	34.1%	52	9.7%	58	10.8%
급별	중학교	54	12.9%	143	34.0%	124	29.5%	42	10.0%	57	13.6%
	전문계고	14	12.0%	39	33.3%	32	27.4%	19	16.2%	13	11.1%
	인문계고	29	6.9%	155	37.0%	162	38.7%	37	8.8%	36	8.6%
지역	읍면	30	10.6%	87	30.9%	80	28.4%	43	15.2%	42	14.9%
	도시	67	9.9%	250	37.1%	238	35.3%	55	8.2%	64	9.5%
합계		97	10.1	337	35.3	318	33.3	98	10.3	106	11.1
		956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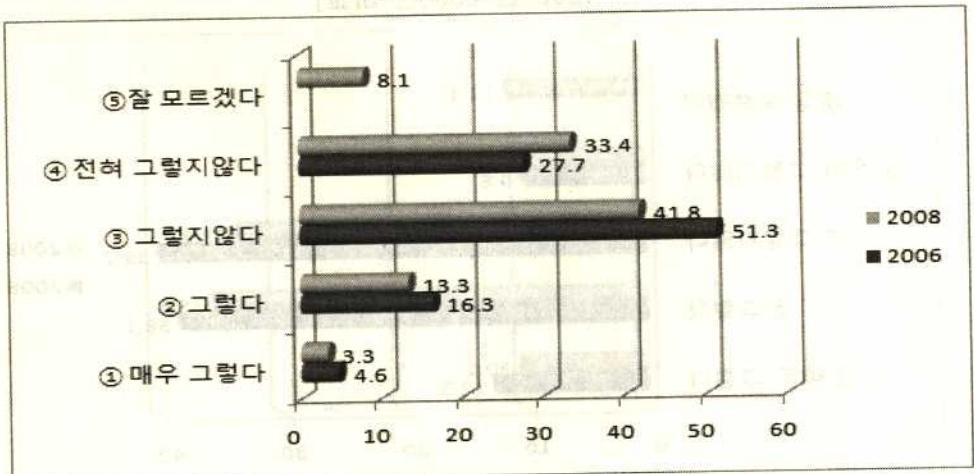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45.3%가 모욕감을 느낀다는 응답을 했다. 이는 요즘 아이들의 높은 자존심에 맞추어 지도에 적절한 언어 선택과 화법의 문제가 대두 된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35.3%)보다는 남학생(45.4%)이, 인문계고등학교(43.9%)보다 전문계고등학교(45.3%)와 중학교(46.9%)가 조금 더 많이 모욕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47.0%)이 읍면지역(41.5%)보다 많이 모욕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두발로 인한 체벌과 같이 이 문항에서도 중학교가 제일 높게 나타나 인권에 대한 의식이 고등학교 보다 더 체벌에 대한 문제를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문7) 학교에서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

문항		1-7. 학교에서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										
변인	빈도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르 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1	2.6%	51	12.1%	184	43.8%	146	34.8%	28	6.7%	420
	남	21	3.9%	77	14.2%	219	40.3%	176	32.4%	50	9.2%	543
급별	중학교	18	4.3%	53	12.5%	170	40.2%	143	33.8%	39	9.2%	423
	전문계고	4	3.4%	14	11.9%	52	44.1%	41	34.7%	7	5.9%	118
	인문계고	10	2.4%	61	14.5%	181	42.9%	138	32.7%	32	7.6%	422
지역	읍면	19	6.7%	39	13.7%	109	38.2%	90	31.6%	28	9.8%	285
	도시	13	1.9%	89	13.1%	294	43.4%	232	34.2%	50	7.4%	678
합계		32	3.3	128	13.3	403	41.8	322	33.4	78	8.1	963

[2006년 2008년 비교]



학교에서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비율이 16.6%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으며 여학생 14.7% 보다는 남학생이 18.1%로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대학 입시 준비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과중한 학습 부담과 경쟁적 분위기가 만연한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 보다 조금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더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문8) 장애학생을 배려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문항		1-8. 장애학생을 배려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변인	빈도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르 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6	1.4%	59	14.1%	113	27.0%	96	22.9%	145	34.6%	419
	남	10	1.8%	60	11.1%	124	22.9%	132	24.4%	215	39.7%	541
급별	중학교	11	2.6%	72	17.0%	93	22.0%	80	18.9%	167	39.5%	423
	전문계고	2	1.7%	7	5.9%	36	30.5%	24	20.3%	49	41.5%	118
	인문계고	3	.7%	40	9.5%	108	25.8%	124	29.6%	144	34.4%	419
지역	읍면	8	2.8%	26	9.1%	74	26.0%	60	21.1%	117	41.1%	285
	도시	8	1.2%	93	13.8%	163	24.1%	168	24.9%	243	36.0%	675
합계		16	1.7	119	12.4	237	24.7	228	23.8	360	37.5	960

학교에 장애학생들을 배려한 시설이 잘 되어있다는 응답이 14.1%,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이 85.9%에 이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배려 수준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나 차별행위가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들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문9) 학교에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사적 생활 영역에 대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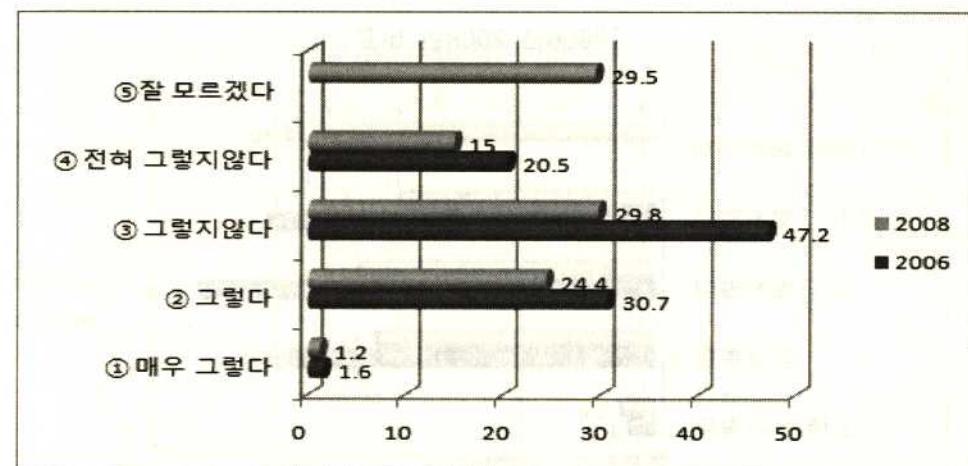
문항		1-9. 학교에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사적 생활 영역에 대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변인	여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않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 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0	2.4%	82	19.5%	146	34.8%	156	37.1%	26	6.2%
	남	36	6.6%	160	29.5%	148	27.3%	153	28.2%	45	8.3%
급별	중학교	16	3.8%	103	24.4%	132	31.3%	130	30.8%	41	9.7%
	전문계고	12	10.2%	32	27.1%	28	23.7%	35	29.7%	11	9.3%
	인문계고	18	4.3%	107	25.4%	134	31.8%	144	34.1%	19	4.5%
지역	읍면	13	4.6%	54	18.9%	92	32.3%	101	35.4%	25	8.8%
	도시	33	4.9%	188	27.8%	202	29.8%	208	30.7%	46	6.8%
합계		46	4.8	242	25.2	294	30.6	309	32.1	71	7.4
											962

학교에서의 소지품 검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없어져야 할 위험한 관행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30.0%로 2006년 조사 때의 44.6%보다 낮아졌으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고 있다. 여학생(21.9%)보다는 남학생(36.1%)이, 중학교(28.2%)나 인문계고등학교(29.7%) 보다는 전문계고등학교(37.3%) 학생들이, 읍면지역(23.5%)보다는 도시지역(32.7%) 학생들이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의 전문계고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10)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

문항		1-10.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										
변인	여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 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5	1.2%	119	28.3%	121	28.8%	40	9.5%	135	32.1%	420
	남	7	1.3%	116	21.4%	166	30.6%	104	19.2%	149	27.5%	542
급별	중학교	6	1.4%	104	24.6%	127	30.0%	53	12.5%	133	31.4%	423
	전문계고	4	3.4%	27	22.9%	25	21.2%	20	16.9%	42	35.6%	118
지역	인문계고	2	.5%	104	24.7%	135	32.1%	71	16.9%	109	25.9%	421
	읍면	5	1.8%	76	26.7%	75	26.3%	32	11.2%	97	34.0%	285
	도시	7	1.0%	159	23.5%	212	31.3%	112	16.5%	187	27.6%	677
	합계	12	1.2	235	24.4	287	29.8	144	15.0	284	29.5	962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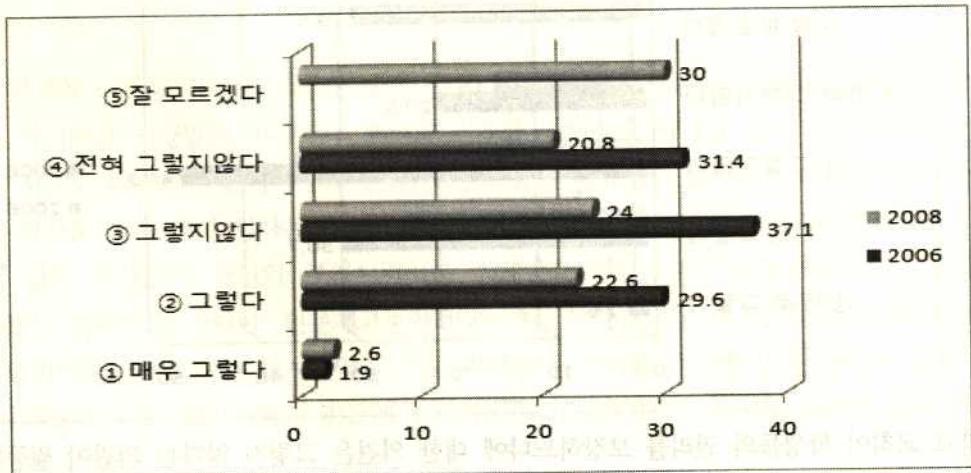
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느냐에 대한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이 25.6%이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4%로 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교칙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의 교칙들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 되었고 변화하고 있는 사회와 학생들의 의식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내면화 과정 없이 따라야 하므로 교칙과 권리보장의 상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로 학생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보다는 학생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도 위의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이 된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9.5%로 이들 학생들은 학교의 교칙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문11) 교칙이나 학생관련 규정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문 항		1-11. 교칙이나 학생관련 규정을 제정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변 인	여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 렇 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 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0	2.4%	108	25.8%	107	25.5%	66	15.8%	128	30.5%	419
	남	15	2.8%	109	20.1%	124	22.9%	134	24.7%	160	29.5%	542
급별	중학교	11	2.6%	92	21.7%	104	24.6%	79	18.7%	137	32.4%	423
	전문계고	5	4.3%	27	23.1%	26	22.2%	13	11.1%	46	39.3%	117
지역	인문계고	9	2.1%	98	23.3%	101	24.0%	108	25.7%	105	24.9%	421
	읍면	9	3.2%	59	20.7%	74	26.0%	54	18.9%	89	31.2%	285
	도시	16	2.4%	158	23.4%	157	23.2%	146	21.6%	199	29.4%	676
	합계	25	2.6	217	22.6	231	24.0	200	20.8	288	30.0	961

[2006년 2008년 비교]



학칙, 교칙, 각종 교내 규정들을 만드는데 학생들이 참여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교칙이 학생들의 권익을 보장하느냐에 대한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74.8%로 월등히 높았다. 이는 학교 내에서 각종 규정 제정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이 배제되고 있으며, 학교 민주화에도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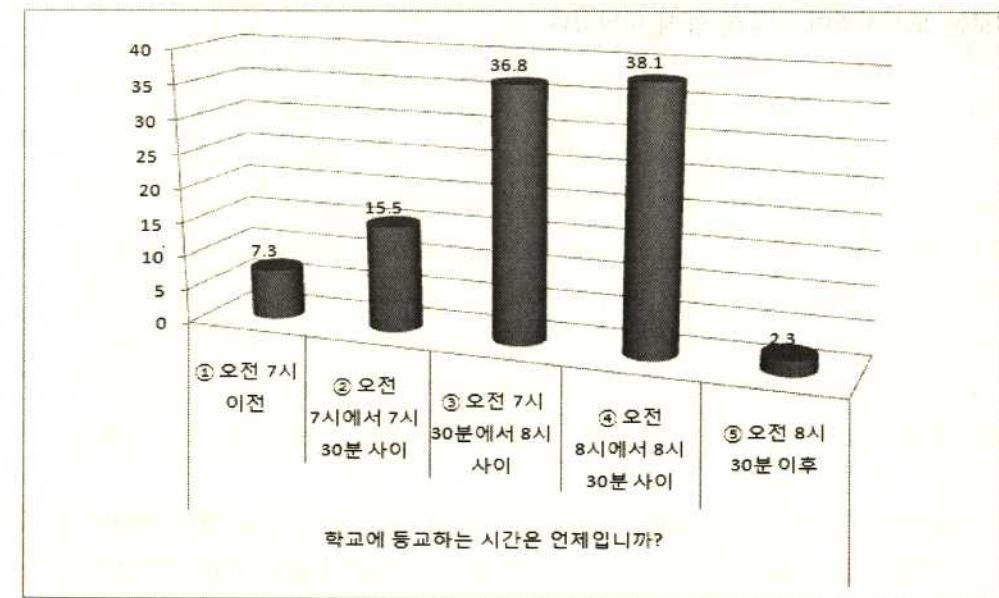
학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배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입시만능주의,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자율적 학생자치 문화의 정착이 요원할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공간으로서 학교교육의 실천적 의미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12)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하고 있다.

문 항		1-12.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하고 있다.										
변 인	여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 렇 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 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21	28.9%	132	31.6%	71	17.0%	66	15.8%	28	6.7%	418
	남	185	34.1%	147	27.1%	70	12.9%	88	16.2%	53	9.8%	543
급별	중학교	94	22.3%	117	27.7%	64	15.2%	95	22.5%	52	12.3%	422
	전문계고	15	12.7%	32	27.1%	27	22.9%	28	23.7%	16	13.6%	118
지역	인문계고	197	46.8%	130	30.9%	50	11.9%	31	7.4%	13	3.1%	421
	읍면	64	22.5%	88	30.9%	46	16.1%	60	21.1%	27	9.5%	285
	도시	242	35.8%	191	28.3%	95	14.1%	94	13.9%	54	8.0%	676
	합계	306	31.8	279	29.0	141	14.7	154	16.0	81	8.4	961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 등으로 정규수업시간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60.8%로 품에 가까운 학생들이 일찍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올해 전교조경북지부에서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해 조사한 내용의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에 대한 응답으로 '오전 8시 이전에 등교한다'고 응답한 학생 59.6%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급별로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77.7%, 중학교 50.0%, 전문계 고등학교 39.8%의 순으로 나타나 입시위주의 교육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이 64.1%로 읍면지역의 5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교조 경북지부 학교자율화 조치 설문조사]



문13) 학생들의 명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고 있다.

문 항		1-13. 학생들의 명시적인 요청 또는 동의 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고 있다.										
변 인	문 항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 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72	17.3%	75	18.0%	98	23.5%	109	26.1%	63	15.1%	417
	남	135	25.0%	106	19.6%	91	16.9%	145	26.9%	63	11.7%	540
급별	중학교	48	11.5%	55	13.1%	83	19.8%	163	38.9%	70	16.7%	419
	전문계고	4	3.4%	13	11.0%	30	25.4%	48	40.7%	23	19.5%	118
	인문계고	155	36.9%	113	26.9%	76	18.1%	43	10.2%	33	7.9%	420
지역	읍면	42	14.8%	45	15.9%	56	19.8%	85	30.0%	55	19.4%	283
	도시	165	24.5%	136	20.2%	133	19.7%	169	25.1%	71	10.5%	674
합계		207	21.6	181	18.9	189	19.7	254	26.5	126	13.2	957

학교에서 야간에 추가적인 수업을 더 받게 할 경우에는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의 명시적인 동의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명시적인 요청이나 동의 없이 야간에 추가수업을 받게 한 경우가 40.5%로 나타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보이고 있다. 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교(63.8%), 중학교(24.6%), 전문계 고등학교(14.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문14)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차별받은 적이 있다.

문 항		1-14.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차별받은 적이 있다.										
변 인	문 항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 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5	1.2%	14	3.3%	136	32.5%	239	57.0%	25	6.0%	419
	남	8	1.5%	13	2.4%	176	32.5%	300	55.5%	44	8.1%	541
급별	중학교	10	2.4%	13	3.1%	118	28.0%	246	58.4%	34	8.1%	421
	전문계고			4	3.4%	41	34.7%	64	54.2%	9	7.6%	118
	인문계고	3	.7%	10	2.4%	153	36.3%	229	54.4%	26	6.2%	421
지역	읍면	7	2.5%	7	2.5%	77	27.0%	161	56.5%	33	11.6%	285
	도시	6	.9%	20	3.0%	235	34.8%	378	56.0%	36	5.3%	675
합계		13	1.4	27	2.8	312	32.5	539	56.1	69	7.2	960

학교에서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을 받은 적인 있다는 학생들이 4.2%로 아주 낮게 나타나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환경이 우리교육에서는 출발선을 다르게 하거나 배움의 기회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15) 학교에서 외모로 인하여 차별받은 적이 있다.

문 항		1-15. 학교에서 외모로 인하여 차별받은 적이 있다.										
변 인	문 항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 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2	2.9%	34	8.1%	144	34.4%	199	47.6%	29	6.9%	418
	남	11	2.0%	39	7.2%	178	32.9%	252	46.6%	61	11.3%	541
급별	중학교	14	3.3%	31	7.3%	124	29.4%	212	50.2%	41	9.7%	422
	전문계고	4	3.4%	8	6.8%	38	32.5%	51	43.6%	16	13.7%	117
	인문계고	5	1.2%	34	8.1%	160	38.1%	188	44.8%	33	7.9%	420
지역	읍면	14	4.9%	22	7.7%	76	26.7%	137	48.1%	36	12.6%	285
	도시	9	1.3%	51	7.6%	246	36.5%	314	46.6%	54	8.0%	674
합계		23	2.4	73	7.6	322	33.6	451	47.0	90	9.4	959

외모로 인하여 차별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이 10.0%로 성별로 인한 차별(17.1%)보다는 낮았으나 가정환경으로 인한 차별(4.2%)보다는 높게 나타나 이 부분도 시정이 필요하다.

문16) 학교에서 특정과목의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성적우수자반을 편성하여 일반학급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 항		1-16. 학교에서 특정과목의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여 성적우수자반을 편성하여 일반학급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변 인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 그 렇 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 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58	13.8%	75	17.9%	123	29.4%	131	31.3%	32	7.6%
	남	162	29.8%	121	22.3%	91	16.8%	128	23.6%	41	7.6%
급별	중학교	52	12.3%	74	17.5%	96	22.7%	154	36.4%	47	11.1%
	전문계고	5	4.2%	15	12.7%	34	28.8%	49	41.5%	15	12.7%
인문계고	인문계고	163	38.7%	107	25.4%	84	20.0%	56	13.3%	11	2.6%
	읍면	52	18.2%	45	15.8%	55	19.3%	102	35.8%	31	10.9%
지역	도시	168	24.8%	151	22.3%	159	23.5%	157	23.2%	42	6.2%
	합계	220	22.9	196	20.4	214	22.2	259	26.9	73	7.6
		962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조치로 과목별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하게 되어 특정과목의 성적우수자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43.3%로 거의 과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52.1%, 인문계 고등학교 64.1%, 도시지역 47.1%로 변인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래 전교조 경북지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중 과목별 수준별 이동 수업 현황 49.3%보다는 조금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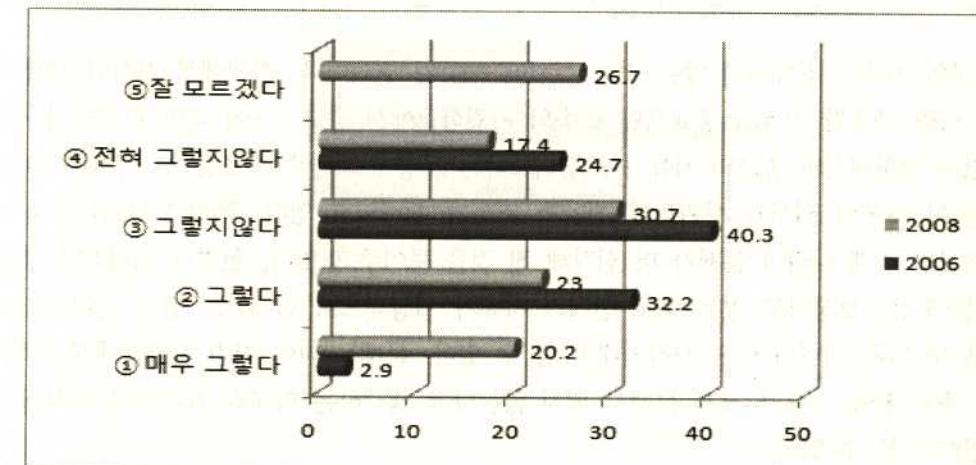
#### [2008년 5월 학교자율화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전교조 경북지부)]

번호 및 질문 내용	보 기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수준별 이동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과목별로 수준별 이동수업	52	27.4	137	71.0	189	49.3
	② 전 과목 우열반	3	1.6	16	8.3	19	5.0
	③ 수준별 이동 수업 실시하지 않음.	135	71.0	40	20.7	175	45.7
합 계		190	100	193	100	383	100

문17)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문 항		1-17.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변 인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 그 렇 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 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0	2.4%	125	29.8%	124	29.6%	44	10.5%	116	27.7%
	남	11	2.0%	96	17.7%	171	31.6%	123	22.7%	140	25.9%
급별	중학교	12	2.8%	92	21.8%	130	30.8%	67	15.9%	121	28.7%
	전문계고	5	4.2%	25	21.2%	25	21.2%	16	13.6%	47	39.8%
인문계고	인문계고	4	1.0%	104	24.8%	140	33.3%	84	20.0%	88	21.0%
	읍면	8	2.8%	66	23.2%	84	29.5%	48	16.8%	79	27.7%
지역	도시	13	1.9%	155	23.0%	211	31.3%	119	17.6%	177	26.2%
	합계	21	2.2%	221	23.0	295	30.7	167	17.4	256	26.7
		960									

[2006년 2008년 비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25.2%로 2006년 조사 때의 35%보다도 더 낮게 나타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사 반영이 더 후퇴 된 것으로 보인다. 축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야영 등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학교와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생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이 더 많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외모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고 실현하도록 돕는 것은 학생자치와 학생인권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다.

#### 문18)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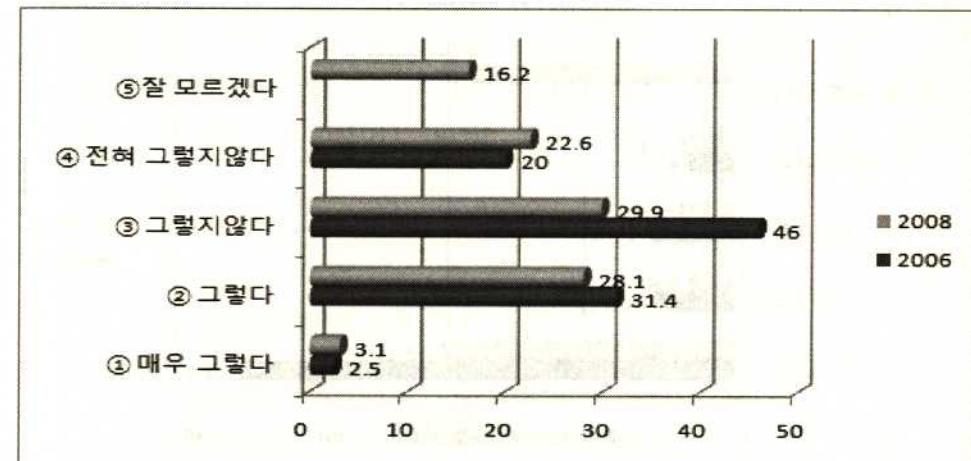
문항		1-18.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변인	여 남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 르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46	11.1%	187	45.0%	46	11.1%	33	7.9%	104	25.0%	416
	남	67	12.4%	215	39.9%	73	13.5%	46	8.5%	138	25.6%	539
급별	중학교	48	11.5%	159	37.9%	47	11.2%	42	10.0%	123	29.4%	419
	전문계고	13	11.2%	39	33.6%	11	9.5%	10	8.6%	43	37.1%	116
지역	인문계고	52	12.4%	204	48.6%	61	14.5%	27	6.4%	76	18.1%	420
	읍면	36	12.8%	106	37.6%	29	10.3%	29	10.3%	82	29.1%	282
	도시	77	11.4%	296	44.0%	90	13.4%	50	7.4%	160	23.8%	673
	합계	113	11.8	402	42.1	119	12.5	79	8.3	242	25.3	955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나, 학교에서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와 종교재단 소속의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느냐는 문항에 과반수에 조금 못 미치는 20.8%의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2006년 조사 때의 11.7%보다 높게 나타나 문제가 더 심각해 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과 세계적인 각종 권고안들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일상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곳이 학교라고 볼 때 또 다른 의미의 인권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특정 종교 활동 강요가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교와 학부모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문19)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변인	문항	1-19.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①매우 그 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 렇지 않다	⑤잘 모 르겠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4	3.3%	138	32.9%	120	28.6%	80	19.0%	68	16.2%	420
	남	16	2.9%	133	24.5%	168	30.9%	138	25.4%	88	16.2%	543
급별	중학교	20	4.7%	123	29.1%	119	28.1%	93	22.0%	68	16.1%	423
	전문계고	4	3.4%	25	21.2%	31	26.3%	31	26.3%	27	22.9%	118
지역	인문계고	6	1.4%	123	29.1%	138	32.7%	94	22.3%	61	14.5%	422
	읍면	14	4.9%	73	25.6%	69	24.2%	83	29.1%	46	16.1%	285
	도시	16	2.4%	198	29.2%	219	32.3%	135	19.9%	110	16.2%	678
	합계	30	3.1	271	28.1	288	29.9	218	22.6	156	16.2	963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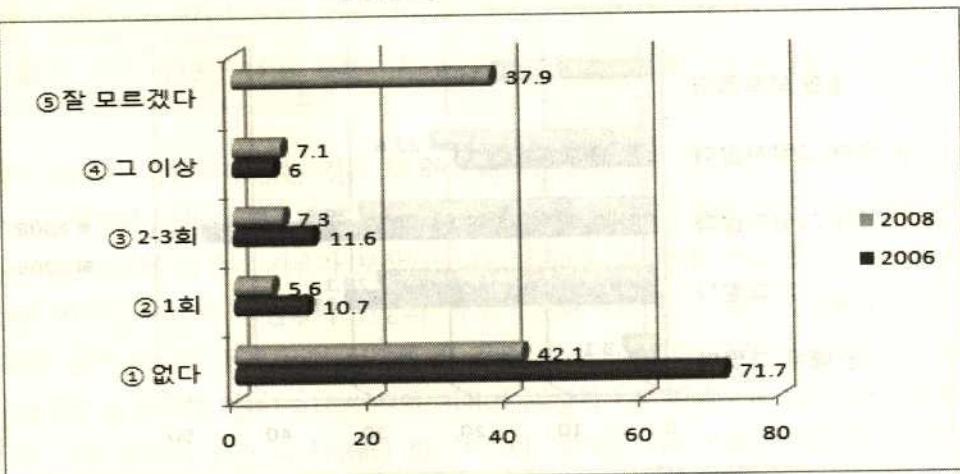


학교는 아이들에게 어떤 곳인가? 거의 매일 눈만 뜨면 가야하는 곳이고 하루 중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인 학교에 대해 아이들이 가지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문항에 과반수이 넘는 52.5%가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고 31.2%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학생, 급별로는 인문계 고등학교,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과반수만이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사, 학교 시설, 학교생활과 학교 문화,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학교라는 공간이 공부도 해야 하는 곳이지만 또래들과의 관계형성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같은 취미나 능력을 가진 동아리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20) 입학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문항	1-20. 입학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①없다		②1회		③2-3회		④그 이상		⑤잘 모르겠다		빈도합계	
변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96	46.8%	23	5.5%	17	4.1%	22	5.3%	161	38.4%	419
	남	208	38.4%	31	5.7%	53	9.8%	46	8.5%	203	37.5%	541
급별	중학교	153	36.4%	26	6.2%	40	9.5%	26	6.2%	175	41.7%	420
	전문계고	25	21.2%	5	4.2%	9	7.6%	24	20.3%	55	46.6%	118
	인문계고	226	53.6%	23	5.5%	21	5.0%	18	4.3%	134	31.8%	422
지역	읍면	94	33.0%	20	7.0%	32	11.2%	27	9.5%	112	39.3%	285
	도시	310	45.9%	34	5.0%	38	5.6%	41	6.1%	252	37.3%	675
합계		404	42.1	54	5.6	70	7.3	68	7.1	364	37.9	960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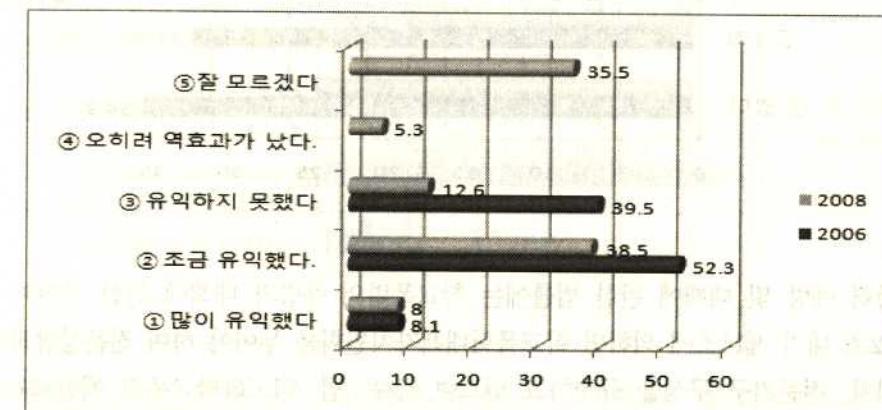
학생 인권에 관해 2006년 조사 때의 71.7%보다는 낮은 42.1%가 내외부의 강사를 통해 단 한 번의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인권교육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그 수준이 미약하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는 학생들은 20.0%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학교와 교육과정이 학생의 인권에는 무관심하며 인권의식이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존중되고 한 인격체로서 생활해나가고 대접 받기보다 오직 공부만 해야 하고 사고를 치지 말아야 하는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학생관이 바뀌어야 하며 학력에만 관심을 두는 교육주체들의 인식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 할 때 엄밀히 말하면 그 수요자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관점과 학생의 관점은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우리도 학생이 학교에서 부당한 처우나 제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르치고, 제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문21)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난 후 유익했다.

문항	1-21.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난 후 유익했다.											
	①많이 유익했다		②조금 유익했다		③유익하지 못했다		④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생각한다		⑤잘 모르겠다		빈도합계	
변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7	8.0%	34	38.6%	12	13.6%	-	-	35	39.8%	88
	남	14	8.0%	67	38.5%	21	12.1%	14	8.0%	58	33.3%	174
급별	중학교	13	9.8%	47	35.6%	19	14.4%	5	3.8%	48	36.4%	132
	전문계고	6	12.0%	16	32.0%	3	6.0%	5	10.0%	20	40.0%	50
	인문계고	2	2.5%	38	47.5%	11	13.8%	4	5.0%	25	31.3%	80
지역	읍면	11	11.5%	39	40.6%	13	13.5%	5	5.2%	28	29.2%	96
	도시	10	6.0%	62	37.3%	20	12.0%	9	5.4%	65	39.2%	166
합계		21	8.0	101	38.5	33	12.6	14	5.3	93	35.5	262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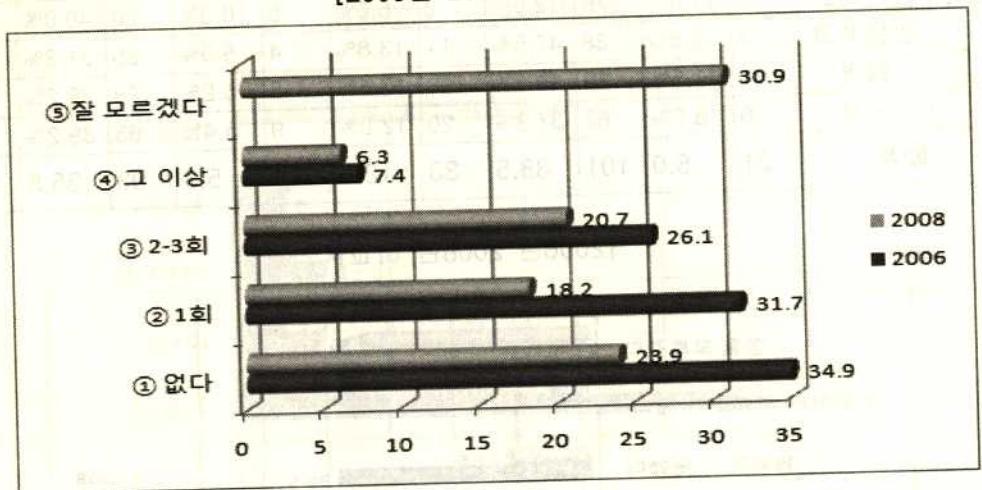


인권교육이 유익했다는 응답이 46.5%로 유익하지 못했다는 응답 17.9%보다 월등히 많이 나왔다. 성별로는 여학생 46.6%, 남학생 46.5%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학교별로는 중학교 45.4% 전문계 고등학교 44% 인문계 고등학교 50.0%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익했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52.1%, 도시지역이 43.3%로 읍면지역이 유익했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왔다.

문22) 입학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감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변인		문항		1-22. 입학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①없다		②1회		③2-3회		④그 이상		⑤잘 모르겠다	빈도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13	27.9%	45	11.1%	91	22.5%	22	5.4%	134	33.1%	405	
	남	111	20.9%	125	23.5%	103	19.4%	37	7.0%	155	29.2%	531	
급별	중학교	73	17.8%	90	22.0%	100	24.4%	33	8.0%	114	27.8%	410	
	전문계고	12	10.3%	14	12.0%	37	31.6%	11	9.4%	43	36.8%	117	
	인문계고	139	34.0%	66	16.1%	57	13.9%	15	3.7%	132	32.3%	409	
지역	읍면	20	7.2%	77	27.6%	84	30.1%	30	10.8%	68	24.4%	279	
	도시	204	31.1%	93	14.2%	110	16.7%	29	4.4%	221	33.6%	657	
합계		224	23.9	170	18.2	194	20.7	59	6.3	289	30.9	936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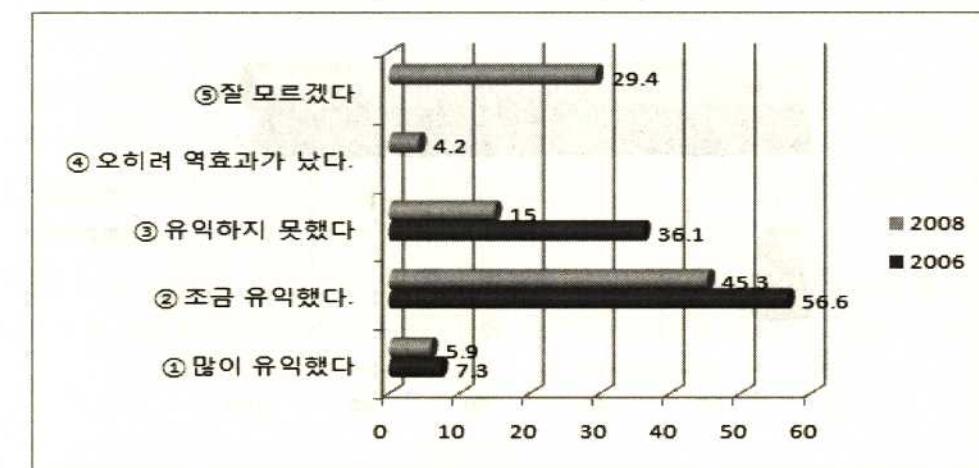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특히, 제12조 내지 제14조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전문상담교사와 책임교사 배치, 전문기구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제1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23.9%나 된다. 교육이 주로 담임교사의 훈화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인문계고 학생들은 34.0%나 폭력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학생들의 31.1%가 폭력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내·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 모든 학교에 대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23)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받고 난 후 유익했다

문항		1-23.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받고 난 후 유익했다.										
		①많이 의했다		유 익했다		③유익하지 못했다		④오히려 역 효과가 났다 고 생각한다		⑤잘 겠다		빈도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9	4.9%	95	51.6%	24	13.0%	1	.5%	55	29.9%	184
	남	19	6.6%	119	41.3%	47	16.3%	19	6.6%	84	29.2%	288
급별	중학교	19	7.7%	118	47.8%	38	15.4%	8	3.2%	64	25.9%	247
	전문계고	7	10.0%	34	48.6%	3	4.3%	7	10.0%	19	27.1%	70
	인문계고	2	1.3%	62	40.0%	30	19.4%	5	3.2%	56	36.1%	155
지역	읍면	20	10.1%	94	47.2%	25	12.6%	8	4.0%	52	26.1%	199
	도시	8	2.9%	120	44.0%	46	16.8%	12	4.4%	87	31.9%	273
합계		28	5.9	214	45.3	71	15.0	20	4.2	139	29.4	472

[2006년 2008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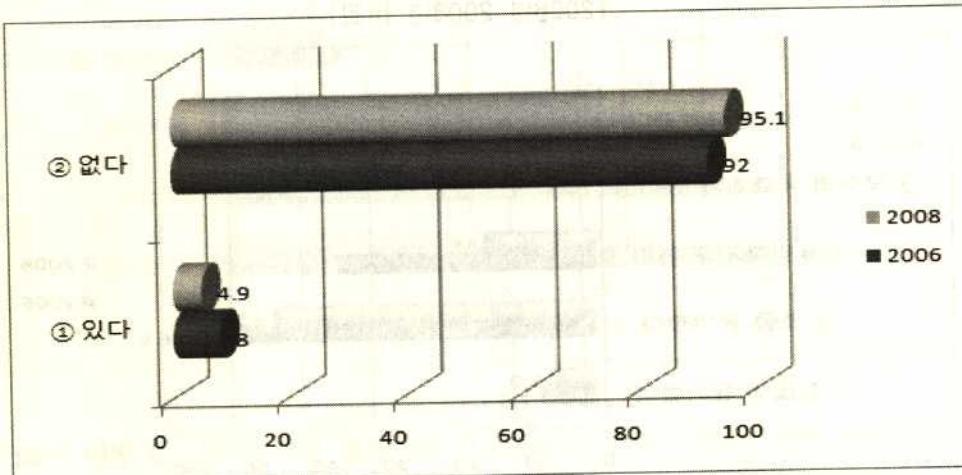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받고 난 후 51.2%의 학생들이 유익했다는 응답을 했으나, 19.2%의 학생들이 유익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폭력예방 교육이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 스스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성장하였을 때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어렵다. 학교와 사회에 비일비재한 폭력은 결국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결과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교육받은 사람이 훌륭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24)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다.

변인	문항	1-24.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다.			
		① 있다		② 없다	
		빈도	%	빈도	%
성별	여	30	7.2%	384	92.8%
	남	17	3.2%	521	96.8%
급별	중학교	23	5.5%	394	94.5%
	전문계고	7	6.0%	110	94.0%
	인문계고	17	4.1%	401	95.9%
지역	읍면	17	6.0%	265	94.0%
	도시	30	4.5%	640	95.5%
	합계	47	4.9%	905	95.1%

[2006년 2008년 비교]



성장기에 또래 아이들로부터 당한 왕따는 정신적인 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 시킨다. 자기 존중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다른 왕따로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려고 하는 심리도 생기게 된다. 공부에 흥미를 잃는 것은 물론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잃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심하게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왕따를 당했다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적으로 4.9%로 나타나 적은 수의 학생들이 아직도 왕따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는 남학생 3.2%보다 여학생이 7.4%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문25) 왕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두 표시해주세요.

변인	문항	1-25. 왕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두 표시해주세요.														
		① 혼자 고민하며 괴로워했다		② 부모님과 상의했다		③ 선생님과 상담했다		④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과 고민		⑤ 자신을 왕따시키지 않은 친구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 했다		⑥ 청소년 상담 전화나 인터넷 상담 사이트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⑦ 주변의 친한 사람과 의논하였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	14	46.7	8	26.7	4	13.3	1	3.3	7	23.3	1	3.3	4	13.3	30
	남	9	42.9	10	47.6			1	4.8	2	9.5	2	9.5	4	19.0	21
급별	중학교	13	48.1	8	29.6	2	7.4	1	3.7	5	18.5	3	11.1	3	11.1	27
	전문고	5	71.4	1	14.3					1	14.3					7
	인문고	5	29.4	9	52.9	2	11.8	1	5.9	3	17.6			5	29.4	17
지역	읍면	9	45.0	7	35.0	1	5.0			3	15.0	1	5.0	1	5.0	20
	도시	14	45.2	11	35.5	3	9.7	2	6.5	6	19.4	2	6.5	7	22.6	31
합계		23	45.1	18	35.3	4	7.8	2	3.9	9	17.6	3	5.9	8	15.7	51

왕따를 당했을 때 혼자 고민하며 괴로워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5.1%에 달해 가장 높게 나타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과 상의했다 35.3%, 자신을 왕따 시키지 않은 친구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 했다 17.6%, 주변의 친한 사람과 의논하였다 15.7%, 선생님과 상담했다 7.8%,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과 고민을 나눔 3.9%의 순으로 나타나 왕따 문제를 가지고 교사와 상담했다는 응답 낮게 나왔다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과의 관계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